


의정활동보고서



제213회 임시회(2007. 3. 13 ~ 3. 27)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절기상으로는 우수·경칩도 지나고 만물이 소생
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 하였습니다.

또한, 민의의 전당인 우리 도의회 본회의장도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더한층 밝은 분위기에서 의정을 논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나간 겨울도 지나고 밝은 꿈과 새 희망으로 다시
시작하는 봄과 함께 우리들 모두에게는 다시 한번 용솟음
치는 힘찬 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국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주민의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여론을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참여하여 도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다해 오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 들어 첫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훌륭한 정책대안도 같이 제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곧 도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는 한편, 건전한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금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따져보고 살피는 것은 물론, 견제와 감시기능을 잘 활용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도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한층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경북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0
1. 소 집	10
2. 회 기	10
3. 활 동	11
가. 본회의	11
나. 위원회	13
III. 의안 처리	16
1. 본회의	16
2. 위원회	17
IV. 민원 처리	19
1. 청 원	19
2. 진 정	19
가. 접 수	19
나. 처 리	20

V. 본회의 보고사항 21

1.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21

2. 조례 공포사항 22

3. 위원회 활동사항 23

4. 기타 의정활동사항 23

VI. 5분 자유발언 28

VII. 도정질문 34

부 록

□ 조례안	125
1.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
2.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130
3.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안	143
4.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5
5.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0
6.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6
7.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7
8.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8
□ 승인 · 동의안	179
1.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서	181
2.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18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13회 임시회는 2007년 3월 13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3월 27일까지 15일간의 회기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 28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3월 13일(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도정질문(김영기·박병훈·한혜련 의원)을 청취한 후 산회했다.

3월 14일(수)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김기홍·이상용·이시하 의원)을 청취한 후 산회했다.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처리와 현지확인 등을 실시 하였다.

3월 27일(화)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 발언(정경구·박병훈 의원) 청취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7-5호(2007년 2월 26일)

라. 집회일시 : 2007년 3월 13일(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7년 3월 13일 ~ 3월 27일(15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3회(누계 20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예결 특위
212회 까지	150	10	21	22	22	19	19	21	16
213회	28	2	6	3	6	3	2	6	
누 계	178	12	27	25	28	22	21	27	16

※ 누계는 제8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7. 3. 13(화) 11:00 (제1차)	1. 제2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도정에 관한 질문 ① 교육환경위원회 김영기 의원 ② 농 수 산위원회 박병훈 의원 ③ 통상문화위원회 한혜련 의원	
2007. 3. 14(수) 11:00 (제2차)	1. 도정에 관한 질문 ① 건설소방위원회 김기홍 의원 ② 기획경제위원회 이상용 의원 ③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이시하 의원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7. 3. 27(화) 11:00 (제3차)	1. 5분자유 발언 ○ 정경구 의원(기획경제), 박병훈 의원(농수산) 2.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4. 경상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안 5.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0.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의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3. 14(수) 14:00 (제1차)	1. 제214회 임시회 회기협의를 건	원안가결
2007. 3. 27(화) 10:30 (제2차)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기획경제위원회〉

개회의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3. 15(목) 11:00 (제1차)	1.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7. 3. 16(금) ~ 3. 17(토) (2일)	1. 타시도 재래시장 방문	
2007. 3. 21(수) 10:00 16:00 (제2차)	1. 현지확인 ○ 대구경북연구원 2.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원안가결
2007. 3. 23(금) ~ 3. 24(토) (2일)	1. 현지확인 ○ 재래시장 (후포, 영해, 영덕)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3. 21(수) 11:00 (제1차)	1. 경상북도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7. 3. 22(목) ~ 3. 23(금) (2일)	1. 현지확인 ○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성주, 김천, 칠곡, 영주)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7. 3. 15(목) 11:00 (제1차)	1.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7. 3. 20(화) ~ 3. 21(수) (2일)	1. 현지확인 ○ 청도학생야영장, 운문댐, 화랑교육원 ○ 포스코, 영일만신항	
2007. 3. 22(목) ~ 3. 23(금) (2일)	1. 교육청소관 관사활용실태 조사(3개반)	
2007. 3. 26(월)	1. 교육청소관 관사활용실태 조사(3개반)	

〈농수산위원회〉

개회의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7. 3. 21(수) ~3. 22 (목)	1. 현지 확인 ○ 김천 건양 RPC(미곡종합처리장) ○ 구미 화훼시험장	
2007. 3. 26(월)	1. 현지 확인 ○ 청도 복숭아시험장	

〈통상문화위원회〉

개회의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7. 3. 22(목) ~3. 23 (금) (2일)	1. 현지확인 ○ 선비촌, 순흥역사문화체험장, 소수서원(영주) ○ 안동중심 숙박휴양거점사업장(안동) ○ 도민체전준비상황 및 경기장시설 점검(상주)	

〈건설소방위원회〉

개회의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7. 3. 15(목) ~3. 17(토) (3일)	1. 현지확인 ○ 울릉 일주도로 개설현장 ○ 울릉도 지역개발실태 등	
2007. 3. 19(월) ~3. 21(수) (3일)	1. 현지확인 ○ 병곡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지품~온정, 달산~남정간 도로확포장 ○ 영덕읍 소도읍육성사업 등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10 (75)	10 (75)	9 (56)	1 (19)				
조 례 안	소 계	8 (49)	8 (49)	7 (36)	1 (13)				
	의 회 제 안	2 (11)	2 (11)	2 (8)	(3)				
	도지사 제 출	4 (25)	4 (25)	3 (19)	1 (6)				
	교육감 제 출	2 (13)	2 (13)	2 (9)	(4)				
예산 · 결산		(8)	(8)	(2)	(6)				
동의 · 승인		2 (8)	2 (8)	2 (8)					
건 의 안		(2)	(2)	(2)					
결 의 안		(5)	(5)	(5)					
기 타 안		(3)	(3)	(3)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12 (81)	10 (75)	8 (49)	(8)	2 (8)	(2)	(5)	(3)	1 (4)		2 (2)
의 회 운 영	2 (11)	2 (11)	2 (5)		(1)		(3)	(1)	1 (1)		
기 획 경 제	5 (16)	4 (15)	3 (12)		1 (2)				(1)		1 (1)
행 정 보 건 복 지	2 (13)	2 (13)	1 (10)		1 (3)						
교 육 환 경	2 (18)	2 (17)	2 (15)		(2)				(1)		
농수산	(2)	(2)	(1)			(1)					
통 상 문 화	(5)	(4)	(1)			(1)	(2)		(1)		
건 설 소 방	1 (5)	(4)	(4)								1 (1)
특 별	(8)	(8)		(8)							
본회의	(3)	(3)	(1)					(2)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 상임위 부결(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4건 〉

- 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 8. 4 교육감제안, ’06. 12. 18 교육환경위원회 부결)
- ②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6. 11. 8 도지사제안, ’06. 11. 29 경제통상위원회 부결)
- ③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06. 12. 8 도지사제안, ’07. 1. 24 기획경제위원회 부결)
- ④ 구미시장의 공무원을 동원한 코오롱정리해고자 농성장 강제철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6. 12. 26 김숙향 의원의 13인 발의, ’07. 1. 24 기획경제위원회 부결)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 : 2건 〉

- ①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
- ②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Ⅳ. 민원 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2 (15)	(1)	(1)	(3)	1 (3)	(1)		1 (4)	(2)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2)			(2)						
행 정 보건복지	(2)	(1)	(1)							
교 육 환 경	1 (4)					(1)		1 (3)		
농수산	(2)								(2)	
통 상 문 화	(2)			(1)				(1)		
건 설 소 방	1 (3)				1 (3)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2 (15)	2 (15)				
의회운영						
기획경제	(2)	(2)				
행 정 보건복지	(2)	(2)				
교육환경	1 (4)	1 (4)				
농 수 산	(2)	(2)				
통상문화	(2)	(2)				
건설소방	1 (3)	1 (3)				
특별위원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7. 3. 2)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2007. 3. 5)
경상북도지사 (2007. 3. 2)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2007. 3. 5)
경상북도지사 (2007. 3. 2)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2007. 3. 5)
경상북도지사 (2007. 3. 2)	제4기(2007~2010) 지역보건의료계획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7. 3. 5)
경상북도지사 (2007. 3. 2)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7. 3. 5)
경상북도지사 (2007. 3. 2)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 위원회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2007. 3. 5)
경상북도교육감 (2007. 3. 2)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위원회 (2007. 3. 5)
경상북도교육감 (2007. 3. 2)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위원회 (2007. 3. 5)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6. 10. 1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06. 11. 2 (제2941호)
2006. 10. 23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2006. 11. 6 (제2942호)
2006. 10. 2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2006. 11. 9 (제2943호)
2006. 10. 23	"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2006. 11. 9 (제2944호)
2006. 10. 23	"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2006. 11. 9 (제2945호)
2006. 10. 23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2006. 11. 9 (제2946호)
2006. 10. 23	"	경상북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2006. 11. 9 (제2947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기획경제 위원회	2007. 3. 8 11:00~14:00	경북바이오산업 연 구 원	• 대구경북경제협력관련 대구시·경북도의회 의원 간담회
행 정보건 복지위원회	2007. 2. 12 2007. 2. 22 2007. 2. 26	구미자연환경 연 수 원 문 경 여 성 회 관 경산상공회의소	• 경상북도보육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통 상문 화 위 원 회	2007. 2. 14	통상문화위원회 회 의 실	• 오리온전기(주) 청산관련 건의안 채택 • 건의안 송부(대통령비서실외 7곳)
통 상문 화 위 원 회	2007. 2. 21 ~ 2. 28	호 뉴 질 랜 드	• 경상북도의회-호주·뉴질랜드간 교류증진 • 경상북도 문화관광 홍보설명회 개최

4. 기타 의정활동사항

○ 포항 MBC “열린세상” 인터뷰

- 일 시 : 2007. 2. 12(월) 18:40
- 장 소 : 포항 MBC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식

- 일 시 : 2007. 2. 21(수) 10:00
- 장 소 : EXCO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안동 MBC "금요포커스" 출연

- 일 시 : 2007. 2. 21(수) 11:00
- 장 소 : 안동 MBC
- 참 석 :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 서상돈, 김광제 선생 흉상 제막식

- 일 시 : 2007. 2. 21(수) 11:30
- 장 소 : 국채보상기념공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7 경북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군순회 버스투어

- 일 시 : 2007. 2. 22(목) 09:30 ~
- 장 소 :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경도대학 학위수여식

- 일 시 : 2007. 2. 22(목) 11:00

- 장 소 : 경도대학교 문화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권영만 의원

○ 독도위문

- 일 시 : 2007. 2. 22(목) 13:20
- 장 소 : 독도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7. 2. 22(목) 15:00
- 장 소 : 대구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김응규 운영위원장

○ 통합방위 지방회의

- 일 시 : 2007. 2. 23(금) 14:00
- 장 소 : 칠곡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송필각의원

○ 국제육상경기연맹 실사평가단 방문 환영연

- 일 시 : 2007. 2. 23(금) 18:3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3. 1절 기념식

- 일 시 : 2007. 3. 1(목) 10:00
- 장 소 : 영주시민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손진영 의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개원식 및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지청 개청식

- 일 시 : 2007. 3. 2(금) 11:00
- 장 소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9층 대회의실
- 참 석 : 방대선 부의장

○ 국회 건교소위 방문(동해안 특별법)

- 일 시 : 2007. 3. 5(월) 13:00
- 장 소 : 국회
- 참 석 : 이상천 의장,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 일 시 : 2007. 3. 7(수) 11:30
- 장 소 : 유통단지 패션센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조선의원동우회 연수회

- 일 시 : 2007. 3. 7(수) 12:00 ~ 21:00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나규택 회장이외 조선의원동우회원 등

○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창립총회

- 일 시 : 2007. 3. 8(목) 11:00
- 장 소 : 대전시 의회
- 참 석 : 이상천 의장
- ※ 이상천 의장님 부회장 선출

○ “부자경북 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07. 3. 9(금) 14:00
- 장 소 : 농업인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상북도의정회 정기총회

- 일 시 : 2007. 3. 12(월) 12:00
- 장 소 : 그랜드호텔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VI. 5분 자유발언

□ 2007년 3월 27일(화) 제213회(임사회) 제3차 본회의

◎ 정경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정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관용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낙동강 프로젝트의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낙동강 프로젝트는 경북의 젖줄이자 영남문화의 모태인 낙동강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등 낙동강을 신성장축으로 육성하여 소득과 일자리가 있는 새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지사님께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도정 주요 전략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현재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열의 있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 구상 시에는 낙동강 수계 연안 5~10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낙동강 문화자원에 대한 일제 조사와 주요 자원에 대한 활용, 개발구상 및 재원조달 방안, 국책사업과의 연계 등에 대해서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5억원의 도비로 금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년간 국토연구원에 기본계획 연구용역중이며, 또 도비 70억원으로 올해부터 일부 시범 선도사업에 한하여 우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는 상주, 문경 등 낙후된 북부지역을 포함해 낙동강 연안 시·군의 뱃길, 나루터, 자전거도로 등 휴양 레포츠 시설과 관광인프라 확충 및 농특산물 공동작업장 조성 등 소득기반 창출을 위한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도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의근 지사님께서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북부지역 개발촉진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 타당성 여부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도 주관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결실이 미미한 실패사례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낙동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나 국회에 매년 국비지원이나 국책사업으로 선정·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만 해서는 원활한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말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낙동강 프로젝트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정부에서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우선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2월까지 수립중인 기본계획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대선후보자 선거공약이 확정되기 전인 금년 상반기나 늦어도 8월 이전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 위주로 마스터플랜을 확정

하여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낙후된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과 동서6축 도로 개설… ‘동서6축 도로 개설’ 정말 중요합니다. 수년째 공사중인 36번 국도 조기 확·포장, 동해 중부선 철도 부설, 울진·울릉공항 건설, 2단계 울릉항 종합항만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정부 예산 사정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시급한 각종 SOC 사업 및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과학기술 분야와 문화, 노인, 장애인 복지 등 분야별 도정 주요시책과 최근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 지원대책 등도 이번 대선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정부 주관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정치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실현 가능한 대책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박병훈 의원(농수산위원회) ◎

경주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병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13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지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본의원에게 다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2일 대전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성과 점검 간담회에서 경주지역의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통령께서 직접 경주 방폐장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이회범 당시 산자부장관이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경주와 경북에 약속했던 사업들이 엄연한 사실임을 재확인하고, 그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4일 추병직 열린우리당 경북도당위원장이 경주시를 방문하여 이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주시민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는 요지를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맡아 시민들의 뜻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어 향후 특별법으로 보장된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신청한 사업들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주지역 방폐장 유치지원 사업

문제는 이미 본의원이 제213회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하였던 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당시 집행부는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들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문보도만 놓고 본다면 방폐장 유치 결정 이후 지금까지 경북도는 무엇을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도는 방폐장 유치 신청에서부터 유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경주시와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방폐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책임 있는 관계자는 중앙정부와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하고 말하였기에 방폐장 지원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까? 또한 이러한 바탕에서 방폐장 지원사업들이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저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당시 집행부는 모든 지원사업이 잘 될 것이라 한 바 낙관론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또한 이희범 산자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당시 행정부지사께서는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관련자금으로 경주시가 에너지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도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지금 책임 있게 추진되어진 실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욱이 방폐장특별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 지역 지원위원회는 물론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데도 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1년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실무 위원회조차 한번 열어보지도 못 했습니다. 그동안 유치지역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포함된 경북도의 관계자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우리부터 먼저 철저히 반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북도는 2008년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모든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북도 관계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와 동시에 경주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 관련예산 확보 방안에도 더욱 분발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VIII. 도정 질문

□ 2007년 3월 13(화) 제21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영기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청송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자경복을 위해 그리고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조병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져 가는 농촌 문제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자타가 인정하는 농도입니다.

그러나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던 말은 정말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열심히 일해 왔던 농업인들의 자긍심은 땅바닥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FTA를 추진하면서 농촌을 개발하고 살린다며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전국의 농촌에 쏟아 붓고 있으나 우리 농촌의 현실이 과연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까지 경작했던 논밭을 버리고 살기 좋은 도시를 찾아

떠나간 농촌에는 황무지와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나마 농촌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들의 형님이요, 부모님인 노인들뿐입니다. 왜, 무엇이 우리 농촌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말입니까?

본의원은 피폐해진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제로 대두되었던 교육·문화적 여건이나 소득격차가 아닌 다른 측면의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연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천연가스 확대보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 주택난방 현황을 보면 유류가 52.07%, 가스 38.33%, 연탄 6.8%, 기타 2.8%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월평균 난방비는 유류나 전기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스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가스는 도시지역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농촌지역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 언제 공급될지 기대마저 어려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오늘도 값비싼 유류나 전기 등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제8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하면 천연가스 수요는 2006년 2,484만톤에서 2020년에는 2,978만톤으로 연평균 3.5%가 증가할 전망이며, 그중 도시가스는 2006년 1,429만톤에서 2020년에는 2,978만톤으로 연평균 5.3%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천연가스 공급 시군 현황 및 계획을 보면 2005년까지 경산, 경주, 구미, 칠곡, 영천, 포항, 김천, 영주 등 8개 시군에 공급이

되었고,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고령군과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문경, 상주, 안동, 영덕, 울진 등 5개 시군을 계획하고 있을 뿐, 나머지 9개 시군은 계획조차 없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서는 알고 계십니까?

물론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망 확충 등에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동 8차 계획에 의하면 저 멀리 있는 섬나라 제주도에도 2012년까지 소형 LNG 기지를 준공하여 천연가스를 보급할 계획이며, 2005년 기준 영남권 보급률이 41.9%로 수도권 87.5%, 호남권 65% 등 전국 평균 70.6%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그 간의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지, 만약 도에서 가스 확대공급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확정·발표되었으나 우리 도의 많은 지역이 추가되어 어려운 농촌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이 동 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면 우선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일정율의 연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조속히 검토·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시군의 소방서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방은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인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촌지역

시군이 인구가 적어서인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소방서 설치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10개 시와 의성, 성주, 칠곡, 울진 4개군 등 14개 시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8년에 고령군, 2009년에 영덕·예천군에 신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상당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나 구조·구급 등 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총액인건비 제도의 도입으로 인력확충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과출소의 확대개편과 119지역대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추가 소요예산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19지역대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농공단지·주택단지·문화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으로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006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위 규정을 위배하여 설치된 119지역대가 무려 68개소에 163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나아가 119지역대의 주된 임무라 할 수 있는 화재진압은 전체 출동건수 8만 2,277건 중 1.8%에 불과하다면 이대로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들 지역의 119지역대를 통폐합한 후 그 인력과 장비를 소방서 신설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소방서가 미 설치되거나 계획되지 않고 있는 군위, 영양, 청송 등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똑같이 중요하고,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도에서는 그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농촌지역의 급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표면은 70.8%가 물이고 육지는 29.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은 우리들 몸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수액의 균형을 유지해 생명을 지탱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부가 발간한 ‘2005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90.7%로 2004년 90.1% 보다 다소 향상 되었으며, 특히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한 결과 읍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년도 82.5%, 35.2%에서 각각 82.6%, 37.6%로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2005년도 상수도 보급률이 77.7%로 전국 평균인 90.7%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경기도 91.7%, 경남 82.6%, 전북 81.9% 등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것은 그동안 상수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거나 투자에 인색하였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이 마시며 살아가는 이 중요한 식수문제에 대하여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용도 경북의 상수도 보급률이 16개 시·도 중 충남, 전남에 이어 끝에서 3번째인데 이정도 수준에서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과감한 투자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시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특히 우리 도에는 지하수, 계곡수, 복류수, 용천수 등 소규모 수도시설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자그마치 4,785개소나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에서는 정수된 수돗물도 믿지 못하여 생수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실정인데도 농촌벽지에서는 상수도는커녕 간이상수도도 없어 아직도 계곡수나 우물물을 이용하는 곳이 이와 같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도에서 상수도 시설에 투자한 최근 5년간 사업비는 2,000억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003년도에 401억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351억원으로, 2005년에 332억원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05년에 466억원으로 늘어났으나 2007년에 다시 453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대부분이 설치된 지 20~30년이 넘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상수도가 설치된다면 간이상수도 노후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상수도의 설치가 곤란하다면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후의 정도에 따라

조속히 개·보수할 수 있도록 상수도 분야에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 부자 경북이 되는 것 다 중요하고 좋습니다. 도로 망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수출도 많이 하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는 물을 도민들이 먹고 있는데, 도민의 건강이 무너진다면 일자리며 도로망이 그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본의원은 감히 지사님께 건의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게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어촌지역에도 상수도시설이 조기에 설치되어 힘든 농업인들이 시원하고 건강한 물을 마시며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건의 드리며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 미설치 군의 소방서 신설계획은 중장기적 소방력 보강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은 미흡한 답변입니다.

본 질문에도 언급하였지만 재산과 인명의 존중은 도시와 농촌이 구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미설치 군의 구체적인 설치계획과 또한 한 방안으로서 군과 군이 연계하여 설치하는 방안이라도 적극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진흥본부장, 제8차 계획에 제주도에 기지를 준공하여 보급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육지의 농촌 지역에는 그런 소형기지 건설이 불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계획에 포함되거나 소형기지 건설이 어렵다면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울릉도에 연료수송비 지원과 비슷한 방안으로 천연가스, 프로판가스의 가격 차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검토하여 건의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삶의 질의 향상은 도시인에게만, 울릉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울릉도에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농촌지역에서는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적극 검토하여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 그리고 2008년에 안동에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북부지역에 천연가스 보급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당겨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그냥 막연하게 앞당겨진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은 안 됩니까?
-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이 부분은 당장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기는 너무나 시급한 농촌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구에 민원업무를 보고자 가정을 방문하여 보면 영하 섭씨 10도인데도 불구하고

방에는 노인 분들이 전기장판 하나 달랑 깔아 놓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안을 해결하고자 방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앉기조차 면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농촌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골고루 갖추어진 다음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고 보면 이미 부모님은 낡은 액자 속에 들어가 계시며 효도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 버립니다.

도지사님 시골에 계신 저희들의 형님이나 연로하신 부모님 모두가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시에는 반팔, 반바지를 입고 겨울을 지내지만 저희들은 방에서도 방한복을 입고 지낼 정도, 한겨울에 다리를 펴지 못하고 주무시는 이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임기 내에 꼭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제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약속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병훈 의원(농수산경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경주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300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관계 실·국장님과 경북교육의 미래와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경북은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으로 도정목표를 정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의욕과 열정과는 상관없이 최근 우리 경북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대규모 사업이 무산되는 일들이 속출하고, 이로 인해 지역간·주민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하는 등 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성마저 여지없이 무너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의원조차도 과연 경북도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우리는 그동안 과연 어느 만큼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전력을 기울였는지 냉철하게 반성하고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자들의 뼈를 깎는 대오각성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 입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즉, 방폐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그 어떤 지역에서도 자발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때문에 방폐장은 지난 19년 동안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장소를 찾지 못했으며, 부안군에는 지원금으로 6조 8,000억원을 제시하고도 부안군수는 군민들이 던진 돌에 머리가 터지기까지 하였지만 결국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쓰레기장이라는 방폐장이 지난 2005년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이 방폐장 유치를 동시에 신청하면서 경쟁구도가 형성되었고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2005년 11월 찬성율 89.5%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그야말로 오로지 경주시민의 힘으로 다른 경쟁지역들을 제치고 경주가 방폐장을 유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주시민이 방폐장을 유치기로 결단한 것은 반세기 동안 문화재보호법의 속박으로 피해해져 침체 일로에 있는 경주를 되살리겠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모두가 죽어도 싫다고 하는 방폐장을 경주로 가져왔던 것임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당시 정부는 방폐장 유치를 독려하면서 우리 경주시민과 경상북도민들에게 뭐라고 하였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5년 유치운동 당시 이희범 산자부장관이 경주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들과 방폐장 유치 간담회를 가지면서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20여분간 설명한 내용 가운데 첫째, “관련 민원은 국가적 과제로 해결하겠다.”는 내용과 둘째, “원전주변지역

지원을 4~5배 확대하겠다.”는 내용, 셋째, “유치지역 지역개발에 6조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 넷째, “장관이 바뀌더라도 책임 지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2시12분 슬라이드 상영개시)

.....

(참조)

- 슬라이드 내용 녹취록 :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 -

앞으로도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국가적 과제로 삼고 저희들이 관련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발효가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지원제도가 바뀌게 되고, 시행령 개정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4기 기준으로 연 2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지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행령 안이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폭 인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지금 4배, 5배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술개발에 관련된 자금이 R&D 자금으로 출연을 해 주는 겁니다. 기관에 그냥 주는 겁니다. 기업에 주는 자금이 내년에는 저희 산자부가 운영하는

것이 2조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자금 에너지특별회계가 2조 4,000억원 정도 되고, 전력기반기금이 1조 8,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사실은 가용재원은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부지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어려운 사업을 유치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산자부도 나름대로… 아까 총리가 주재하는 정부 차원의 유치지원위원회도 물론 충분히 가동을 하겠지만 산자부 스스로도 가용재원을 모두 동원해서 지역 발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아까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린…

오늘 참석하신 우리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또 지도자 분들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면 산자부로서는 아까 우리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엄청난 부채를 지고 경주 발전에… 제가 물론 장관을 그만 두고 다음 장관이라도 경주 발전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믿고 좀 이번에 국책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12시14분 슬라이드 상영종료)

잘 보셨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행정부지사님도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폐장 유치운동 당시 경주를 방문한 이희범 당시 산자부장관은 방폐장을 유치할 경우 모두 6조 2,000억원의 산자부 가용자금을 동원해 지역발전을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치가 결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부가 약속했던 공약사업은 줄줄이 무산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의 감언이설을 얼마나 어리석게도 믿고만 있었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경주시가 정부에 요청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모두 118건, 8조 8,526억원이었으나 관련부처의 검토결과 완전수용이 가능한 사업은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조건부 수용 36건, 일부 수용 8건, 장기검토 6건, 수용불가 사업이 무려 62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수용한 6건의 사업들도 이미 시행되거나 시행계획에 있던 사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의 문제만 하더라도 한수원 본사 유치는 30여만 평에서 4만여 평으로 줄어 10분의 1정도로 결정되었고, 더욱이 본사 이전이 경주 장기발전이라는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등 방폐장 부지선정에 따른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치결정이라는 문제로 접근하여 갈등의 씨앗을 뿌려 방폐장이 들어서는 양북·양남·감포 등 도심권의 주민과 민민갈등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여 화합의 경주를 두 동강이 나도록 만들어 분열의 경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장관이 직접 언급한 지원약속을 이제 와서 애항심에서 비롯된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등 경주시민은 물론

경북도민을 노골적으로 우롱하고 있습니다.

방폐장 유치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정신적 공황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폐장이 유치된 경주지역 뿐만 아닙니다. 탈락지역의 지원사업도 대부분 수용거부 되었습니다. 포항의 경우 500억원의 동북아테크노센터 건립사업 외에는 지원근거가 없다고 하고, 영덕군의 경우에도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신재생 에너지전시관, 특산물판매장 등 32억원이 고작입니다. 어떻게 이렇듯 명백한 거짓말이 난무하고 최소한의 믿음마저 배신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다는 말입니까?

이에 본의원은 경주시에서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유치지역 지원 요청 사업비가 당초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 미이행될 경우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을 불허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최대 치적중의 하나로 방폐장 부지문제 해결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도 정작 방폐장 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검토 결과는 조건부 수용 혹은 수용불가 사업 등이 대부분으로 이는 경주시민의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으로 경주시민은 물론 경상북도민이 분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수원 본사의 완전한 이전과 협력업체 유치라는 당초 약속의 이행을 담보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폐장과 아울러 유치된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21세기 미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당연히 국가가 투자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방폐장 유치에 연계되었다고 하여 1,7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방안과 국비 확보대책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참여정부가 지원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을 경우 신월성원전 1, 2호기 건설, 고준위 폐기물 보관 월성원전 1호기 연장, 방폐장 건설 등 경주와 관련된 모든 정부사업을 백지화하고 강력한 결사항쟁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방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는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40년 넘게 제약당하는 고통을 받으며 침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30만 경주시민들은 문화재로 인한 도시계획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수하며 양보와 희생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늘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15년 전 정부는 경주시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주에 경마장을 건설하여 연간 150억원의 지방세를 늘려준다고 약속하고는 뒤늦게

해당 부지를 사적으로 묶어버렸는가 하면, 2004년에도 또 정부는 태권도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또 난리법석을 피우며 경주가 역사, 전통 문화적 연관성에서 어느 곳보다도 우수한 경주를 전북 무주로 빼앗겨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껌데기뿐인 방폐장 지원 방안에 이르기까지 국책사업들이 잇따라 좌절되어 지금 경주시민들의 가슴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울분과 분노만이 가득한 지경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4년 3월 참여정부가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면서 경주를 역사문화도시, 부산을 영상문화도시, 그리고 광주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아래 「경주 세계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이라는 국책사업을 통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경주가 새로운 활력을 겨우 모색하는 마당에 지난 2006년 10월말 광주시의회는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인 광주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국가재정 부담에 따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비상식적인 논리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경주를 또 한번 충격 속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광주가 문화적 역사적인 기반이 취약함에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이 국회를 손쉽게 통과한 것은

오히려 정치적 배려가 비상식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만 200점이 넘고 세계문화유산이 2건이나 있는 경주의 문화유산은 어느 한 지역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영구히 보존해야 할 우리 한민족의 정신이자 전 세계 인류의 자산으로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특별법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특별법은 중앙정치인들의 정치적 타협의 카드로만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며 2006년말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경주특별법 국회통과에 합의하여 놓고도 아무런 기약도 없이 이번 회기도 끝이 났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이를 추진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벼랑 끝에 선지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농민들에게서 희망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당장 이제부터 본격적인 농사준비에 들어가야 하지만 불안하기만 합니다.

수 백 만원에서 수 억 원에 이르는 농가부채는 이미 농민들을 탈진상태에 이를 만큼 목줄을 죄고 있으며 매년 상승하는 농업관련 기자재 값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농심이 정부의 농업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82조원을 투입하였고 지난 2003년에는 다시 투융자를 중심으로 10년 동안 119조원을 농업, 농촌, 농민에게 투입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농가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비해 80% 이하를 밑돌고 있으며 '95년 농가당 부채가 평균 916만원이던 것이 2005년에는 무려 2,721만원으로 오히려 1,805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의 농촌을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망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농민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한번 명쾌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몇 가지를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기계와 관련해서 입니다. 농산물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농작업 대부분은 농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부녀자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기계화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농업정책의 변화로 인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서는 더욱 더

농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기계는 농업의 기반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친환경농업에서 꼭 필요한 승용예취기, 퇴비살포기, 고성능살포기 등은 최고 8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가고, 가장 일반적인 트랙터 한 대 평균 1,700만원, 콤바인 한 대에 3,500만원 정도에 구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농민의 전국 연간 농가 평균소득 2,700만원에 비하여 농기계 값이 이처럼 턱없이 비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치단체에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가에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농기계 임대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최근 농기계임대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농림부는 지난 2006년말 현재 33개소에 불과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2011년까지 320개소, 2016년까지는 60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4개 시군에 지원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1개 시군 1개소에 5억원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 비치하여 희망농가에 임대할 경우, 희망하는 읍면이 많거나 수요가 많은 시군의 경우 같은 시기에 동일한 농기계 임대를 필요로 한다면 농가의 수요에 얼마만큼 충족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형농기계는 고장 시 수리비가 많이 들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관리부실이 초래될 수 있어 임대사

업자나 임대농가들도 대형 농기계보다는 이앙기 등 중소형 농기계를 선호하고, 중소형 농기계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약 15년 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당시에 농민지원시책으로 추진한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으로 일반 농가에서 대형 농기계를 구입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농기계들이 내구연한을 한참 지나 이제 교체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0여년 전 보조로 공급받은 농기계는 폐기 직전인데 정부보조는 끝났고 수 천 만원짜리 농기계를 교체구입하자니 농가에는 부채만 남아 있고 용자를 받으려고 하여도 담보능력이 없어 농가 경영의 현실적 어려움이 가중되고만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국적으로 대형농기계 교체시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과는 별도로 대형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형농기계의 경우 세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농기계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폐농기계를 방치하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농기계를 폐기하고 새로 구입할 때 자금을 보조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다양한 명분과 시책으로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더불어 대형농기계 보조를 재개하도록 타 시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료값 문제입니다.

지난 2월 25일 농협중앙회는 남해화학, 삼성정밀화학 등 비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한 결과에 따라 화학비료 판매가격이 21일부로 2.7% 인상되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화학비료의 95% 이상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을 통하여 모두 농가에 팔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6월까지 5년 동안 한번도 가격변동이 없었던 화학비료값은 2004년 7월 13.3%를 시작으로 오르기 시작해 이번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실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학비료의 경우 종전 4,000원 하던 요소값이 9천원까지 인상되어 올해부터 거의 100%이상 인상된 값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부보조의 단계적 철폐와 비료 원자재값의 상승이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는 비용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배경설명과 더불어 갈수록 어려운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비료값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세유 문제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름의 완전 면세 적용 시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이며 12월까지는 75% 감면되며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면세유도 지난해 연초 ℓ 당 530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700원으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배정량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쟁력 없는 농업을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민들의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지난해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 200ℓ 들이 1드럼 당 8만 6,840원이다가 지금은 11만 1,420원까지 폭등하면서 어민들이 출어할 의욕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면세유비과세 감면제도를 영구화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경북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조금 많이 줄였는데 이후에 고쳐놓지 않은 것 같아서 시간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실무진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늦게 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 잘 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질문하고 바로 또 보충질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밥 먹고하다보니 다 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때로는 질문하지말까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경북에 사는 많은 도민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함께 노력하고 잘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간적인 어떤 마음을 조금 뒤로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본부장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폐장이 유치된 이후에 2005년 11월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고 당초 지원사업특별법에 의해서 경주시에서 118개 사업에 8조 8,00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완전수용은 6건이었습니다. 그 완전수용 6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완전수용이 신규사업이었는지 아니면 기히 시행되고 있었던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업이 경주시의 올해 예산에 반영되고 있었던 사업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 929호선 우회도로 본길을 개설 도로 건입니다. '84년도 경주에 월성원자력 1호기에서 4호기를 지을 때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민들이 신월성원전 1, 2호기 증설을 하면서 공유수면 이용권을 부탁을 할 때 그때 한수원 본사 사장이 내려와서 그 도로를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에 완전수용으로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기히 건설교통부의 제2차 국토건설5개년계획에 포함되어있었다든지 기히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6개 중에 5개 사업이었습니다.

경주시민이 요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완전수용에 대한 예를 일단 우리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완전수용이 이러한 처지에 놓였는데, 거기에 조건부수용, 그 다음에 일부수용,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경상북도와 경주시, 함께 노력해서 수용불가 한 부분을 19개 중에서 15개는 긍정적 답변을 들으셨고 4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능하면 수용되도록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15개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 본의원이 아는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5개 중에서 대부분이 장기검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수원 본사나 방폐장을 유치한 이후에, 특히 3개,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 그 확정된 사업도 한수원 본사는 25만평~30만평에서 4만평으로 줄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검토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좀 장기검토 했지만 나중에 되어서 하다보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더 이상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 경주시민들은 걱정을 하느냐 하면, 한수원 본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경주시민에게 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본사와 관련된 6개 사업 중에서도 5개를 수용불가 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하나만 봐도 우리 경주시민들이 이 부분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까지 우리 본부장과 도지사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경주발전은 곧 경상북도의 발전의 초석

이라는 마음으로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부분과 그 다음에 수용가능하다고 답변 받으신 부분과 일부수용, 조건부수용 받으신 부분들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두 가지를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 정부에서 2003년도에 발표를 하고,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부산의 영상도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2005년 7월에 경주에 장관과 문화재청장이 내려왔습니다. 경주시민을 모아놓고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믿을 수가 없어서 특별법을 정종복 의원이 입법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저는 또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는 벌써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재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아직 안 났습니다. 경주 아직 안 났습니다. 경주 건은 아직도 문화관광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도에 결정된 태권도공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경주가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진 방폐장 유치 이후에 경주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은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 정부에서 1,300억, 지방자치단체에서 300억 해서 1,600억 국가정책사업이 지금은 7,5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회의 문화관광 상임위를 통과해서 지금은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것도 붙잡지 않았으면 지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지사님, 제가 경주의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을 살려야 하고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문화도시특별법, 도지사님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 하셨는데,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농촌은 어렵습니다. 농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FTA라든지 여러 가지 태풍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YS정부 때 농업정책에 42조원을 썼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45조원을 썼습니다. 열린 정부가 지금 투·융자를 포함해서 118조원을 올해까지 씁니다.

15년 정도 세월에 돈 투자되는 금액이 200조원입니다. 우리 농가수가 100만 가구입니다. 농민이 300만명입니다. 한 명당 나누어지

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가구당 나누면 2억원 가까이 됩니다. 농업정책이 돈을 적게 사용되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 제가 여기에서 트랙터 부분, 문민정부에서 트랙터를 지원해 주었는데 트랙터로 인해서 농가부채가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트랙터가 있기 때문에 농가의 기계화, 현대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농촌이 고령화 되었습니다. 여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촌에 가면 젊은 사람이 농사를 다 지어 줍니다. 트랙터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를 원합니다. 임대사업법 중소형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고액은 빌려가는 주체가 누구인지 내일되어서 고장 났을 때 불분명합니다.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농촌에 고액의 농기계 부품 수입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기계 보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료값 공교롭게도 북한에 퍼주고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친환경 농업하는 사람이 10%됩니다. 10%에 지원하는 돈이 400억원이 넘습니다. 90% 농민들이 짓는 화학비료에 지금 한 포에 9,000원 합니다, 4,000원하던 것이.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90%에게도, 어려운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농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면세류 문제는 지금 농림부에서 국회계류 중이라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체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해서 타시·도 광역시도와 연계해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0대 프로젝트 나왔습니다. 농어업 10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잘사는 경북농업, 농어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경북 신농업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농업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북농업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한혜련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영천시 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한혜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도민의 행복과 복지, 경북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조병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은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2007년 경칩도 지나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그리고 날로 드세지는 쌀시장 개방압력 등으로 매우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007년 새해에는 분명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며 출발하였지만 최근 미국경제의 침체전망이나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 그리고 내수시장의 부진에 이어 지난 1월중 경상수지가 5억 1,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들의 어깨를 한층 더 무거워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그야말로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통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옹도경북의 미래를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각성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

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U자형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북에서는 울진-영덕-포항-경주를 잇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가 지대한 관심 하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의 뒷받침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도가 집행 가능한 재원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세 중에서 100억원에 지나지 않아 국책사업화를 통한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최근 우리 경북은 각종 국토개발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영일만 신항은 규모의 축소를 거듭하고 있으며, 경주 방폐장 유치에 대한 지원책은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포항과 울산간의 도로건설은 전면 유보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국책사업화는 앞으로 보다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본의원은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우리 경북의 진정한 경제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경북동남권 개발이 연계되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욱이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하고 있는 만큼 경북발전을 위한 대단위 U자형 개발 클러스터 전략을 새로이 구상하고 그 하부계획에 따라 구미, 칠곡, 대구, 경산, 영천, 경주, 포항을 잇는 동남권 대규모 산업벨트의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하여 경북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의 혁신도시, 울산의 대규모 산업시설 등 그리고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상호 연계되어 경북 동남권의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조기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필적할 수 있는 제2의 산업경제와 일 자리를 창출해 내고 인재와 돈이 모여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경북 U자형 개발의 중심에 서있는 영천은 구미시에서 칠곡군과 대구를 거쳐 경산, 경주, 포항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의 중간에 있으면서도 변변한 산업단지도 없는 형편입니다.

최근 우리 경상북도는 포항시에 포항첨단생태과학단지 88만평을 비롯하여 영천시에 금호읍 구암리 단지 50만평 등을 대규모 신규산업단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경북의 미래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300~40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건설을 통해 제2의 신도시로서 기업도시를 건설한다면 구미, 칠곡, 대구의 혁신도시 그리고 포항과 경주로 이어지는 대단위 산업벨트라인을 통해 얼마든지 경북의 신성장 동력

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미~칠곡~대구~영천~포항을 잇는 벨트권역을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받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의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미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진해, 인천, 광양만권 3개 권역은 대형개발
사업과 외국기업 유치 등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 정책이 인천, 부산, 광양권 3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경북은 미래의 발전 축에서 소외되는 양상
마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북 동남권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 U자형 개발을 보다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서민경제와 국가경쟁력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재래시장의 활성화
를 통하여 재래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재래시장의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사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북지역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와 아울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일부 재래시장의 경우는 상품권이나 재래시장 투어에 힘입어 그나마 활기를 이어가고 있는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양극화가 일어나 대형규모의 재래시장을 제외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재래시장은 더욱 더 위축되어 가고만 있습니다.

이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대구 전역에 통용되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북에서도 경북 전체 재래시장 혹은 권역별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대형마트에 대하여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품의 다양화는 물론 상품의 질을 소비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한 재래시장 상인 전용의 물류시스템의 완비, 그리고 정확한 원산지표기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을 고쳐야 하겠습니다. ‘재래(在來)’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예전부터 있어 전하여 내려온다’라는 것이나 재래시장은 지금 서민경제 활성화의

지표이며 우리네 이웃과 사람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소통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재래시장이라는 말로 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2005년의 재래시장박람회 등을 비롯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전개되고 있으며, 영어로 재래시장은 트래디셔널 마켓(Traditional Market)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먼저 우리 경상북도에 서부터 재래시장이라는 명칭대신에 전통시장으로 부르도록 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귀농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양극단을 급격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령화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로 특히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202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무려 150만 가구가 늘어 전체 가구 중에서 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북 도내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률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절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도내 농업종사자 54만 3,237명 중에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3만 7,147명으로 43.7%를 차지하여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46.1%로 전라남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반면에 30~40대 청·장년층은 경북 도내 전체 농업종사자의 18.4%인 10만 134명에 불과하여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는 경북 도내 휴경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농업 생산성도 크게 악화시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청·장년층의 귀농인 유치를 위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전북 진안군은 귀농인 중심으로 매월 9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마을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 고성군은 도시민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전입자에게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도내에서도 농민사관학교, 귀농인 정착 전문교육, 그리고 귀농 및 영농상담소 등을 통해 귀농인에 대한 농업기술·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은퇴자 및 귀농인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먼저 전체 귀농인 인구 중 경상북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검토해 보고 귀농인구의 경북 도로의 전입을 늘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은 물론, 귀농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행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넷째, 저출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구가 대구는 늘고 경북은 줄었다’, ‘돈 들어도 좋다 인구만은 늘어다오’, ‘고령화 가속 경제성장 뚝’,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큼니까’, ‘인구 5만 지켜라’ 등 처절한 기사 제

목을 접하면서 본의원은 경북의 미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사회·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가히 출산파업으로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북 도내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합계 출산율이 2000년 1.39명에서 2005년 1.17명으로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경상북도의 인구는 1979년의 498만명을 기점으로 2005년 현재 271만명까지 추락하였으며, 해마다 인구가 1~2만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곧바로 학생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실제 올해 경북에서 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전체 594곳 가운데 23곳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신입생 1명으로 입학식을 치를 학교도 34곳이나 이르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노인인구는 또 급속히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의 도래와 함께 사회복지적 경비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군지역 인구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되어 출산율 저하를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이들 각 요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여성들에게만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지우는 것에서

탈피하여 사회와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전담부서로 가칭 ‘인구정책관실’ 또는 ‘저출산대책과’ 등의 전담부서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임신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의료혜택과 산후조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아울러 국제결혼에 의한 이민여성의 임신·출산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한 권역별 임신출산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5일 수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 공립학교의 주5일제 수업은 지난 1992년부터 월 1차례, 1995년부터 월 2차례 실시되었다가, 2002년부터 토요일 수업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식으로 전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5일제 수업은 전면도입을 하면서 시간적·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남은 시간엔 취미활동이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겠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채 안된 지금 일본 정부는 수업시간의

확대, 평일 방과 후와 토요일 보충수업 실시 등을 통해 수업시간을 다시 늘리는 방안을 적극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일본교육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자문기관인 ‘교육재생회의’는 일본 학생들의 학력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시간의 10% 증가와 더불어 공립학교의 주5일제 수업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재생회의’는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여유 있는 교육이 일본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비행학생 증가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궤도수정이 지금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를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이 야심차게 시작했던 교육철학을 5년도 안 되어서 다시 거두어들리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는 지금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학습부담을 줄이는 방안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하여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난 2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월 2회 하는 주5일제 수업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크게 줄일 것을 검토해 왔던 수업시간도 연간 34시간 범위 안에서만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는 주5일 수업제를 향한 흐름에 대해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향후 주5일제 수업에 대한 바람직한 도입방향은

무엇이며, 주5일제 수업에 따라 있을 수 있는 학력부진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실용교육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적으로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경제교육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교 경제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구조에 의하면 일반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지식을 공부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알아도 소비자로서의 합리적인 소비행위나 신용관리, 금융기법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현재의 교육과정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과 교육과목은 생활법률교육이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의료교육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교육감님께서 중·고교 과정에서 이러한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 제가 10분의 시간에 맞추려니까 간단명료하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 있는 경북’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경제 도약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 정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미래를 향한 인재교육에 힘써 주시고 계시는 조병인 교육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우리 U자형 개발에 관해 가지고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성환 본부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 수출주력품목이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수출주력품목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와 관련된 주요수출품목은 전자와 자동차일 것입니다.

○ 때문에 대구와 경북, 울산과 경남 등으로 부품소재산업육성의 적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 전자부품소재벨트는 어디를 말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 자동차부품소재벨트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부장님 아시죠?

○ 그러면 전자부품소재벨트는 구미, 대구, 영천, 포항을 그리고 기계자동차부품소재벨트 대구, 영천, 경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북이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전자, 자동차 생산을 위한 소재벨트가 모두 영천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 영천에서 하이브리드부품기술연구단지가 지금 하나 우리 영천에서 시작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는 여러 가지로 영천이 가지고 있는 교통인프라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50만평의 산업단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은 영천지역이 향후 우리 경북이 성장 견인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면 그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단지가 지금보다 더욱 더 확대되어서 300~400만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도시를 정말 우리가 조성하여야 할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와 더불어 919호선에 아울러 전자제품소재벨트와 자동차부품소재 중심으로 기능을 위해 가지고 영천지역에 919호선 지방도로 4차선 확장에 제가 오늘 여기 우리 청통면민들이 919호선 확장을 위해서 진정건의서를 지금 받아서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통면

민들의 가장 눈물어린 애로사항이고 이래서 오늘 본의원이 도정질문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영천지역에 부품소재 벨트화, 자동차 중심지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도로 919호선 경산시 와촌면 경계, 영천시 신령면 확장 사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까? 하양에서 와촌까지는 금년 내에 완공된다고 하셨습니다요?

○ 이에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공사가 완료되면 와촌에서 신령까지는 분명히 이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도로 919호선은 대구동부권, 경산시 하양읍에서 군위, 의성, 안동 등 북부 지역으로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입니다. 2004년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청통 와촌IC 개통으로 인해 하루에 919호선의 교통량이 9,521대가 지금 2006년 기준으로 하루 양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8,000대가 넘으면 4차선 도로를 확장해 준다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예, 그러면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기회가 되시면 이리로 현지확인을 한번 오시도록 지금 제가 부탁드립니다. 도로가 1차선 편도이다 보니까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청통면민들이 지금 장애인이 되고 사망자가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리로 가면 제발 우리 919호선만큼은 우리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오늘 이렇게 건의서를 다 같이 와서 우리 지사님에게 건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지사님도 정말 새벽부터 우리 경북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와서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오늘 같이 안 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조성배 국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님들,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경북의 재래시장 경쟁력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경쟁력 진단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 재래시장 경쟁력 평균점수는 49.3점에 불과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경북 재래시장의 경쟁력은 이보다 더 심각하여 상인조직, 입지 및 상권, 시설개선, 경영능력 4개 분야 24개 항목의 경쟁력 현황조사에서 경북은 45.6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시장경영지원센터나 중기청에만 우리가 맡기고 있고, 경상북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해 보시고요. 사실 상인들의 의식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우리 재래시장하고 틀려서 현대화 리모델링이라든가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현대화를 해 놓고 그걸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꾸만 재래시장이 자꾸...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가면 정말 신선하고 질 좋은 상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 우리도 차원에서 상인들의 의식을 함양시켜 줘야 되고, 또한 상인들에게도... 이제 국제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에 직접 가서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우리가 세워놔야 되겠고.

재래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상인들이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현대화 리모델링, 시설 등등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놓고 상인들이 시장의 경영마인드라든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장경쟁력을 좀 확보시킬 수 있는 그런 워크샵을 좀 자주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맞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투자를 했으면 그 전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내어놓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돈만 주고 발전전략이 없으면 그 성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품권 판매에도 여행상품과 같이 우리가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북방문의 해가 아닙니까?

○ 그래서 상품권 발행도 우리 경북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발행을 하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 국제 간에 서로 오고가는 이러한 국제화 시대에 재래시장도 홍보하고, 각 대륙별로 우리나라 방문의 수요라든지...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재래시장부터 먼저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도 올해 경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재래시장 쪽도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품권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과 유통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2007년 3월 14(수) 제21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기홍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에 노심초사하시는 조병인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덕출신 건설소방위 소속 김기홍 의원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실업문제, 고령화, 저출산 등 총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들의 열망을 담고 제8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찬 전진을 하고 있는 지금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도 조례나 개별법령에 의해 현재 도에서 102개 위원회가 당연직을 제외하고 1,068명 정도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임기 6년 이상 장기간 위촉 위원수는 6년에서 8년이 80명, 8년에서 10년이 13명, 10년에서 12년이 24명, 12년에서 14년이 10명, 14년에서 16년이 8명, 18년 이상이 2명 등으로

서 6년 이상 장기위촉 위원수가 전체위원수의 13%인 137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촉위원 소속도 대부분이 영남대, 경북대 등 특정대학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 위원회 운영에 있어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1회 정도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 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위원 임기제한 규정 없이 장기간 위촉 운영할 경우 특정인의 의견이 전체 위원회의 의견으로 대변되는 등 급변하는 행정, 도시, 사회 환경 등 시대 변화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특정지역,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도내 권역별 지역현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산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골고루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서는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운영하고 6년 이상 장기간 위촉 중인 위원은 3회 이상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제히 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도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하여 1인이 2,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별, 연령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료원 및 산하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8일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의 경우 경기도 이천도립병원 준공식장에서 경영이 부실한 산하기관 및 도립병원은 문을 닫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항, 김천, 안동 의

료원에 대한 최근 3년간 경영성과를 보니 시설장비보강 및 경상운영비 등으로 2006년도에는 안동의료원에 53억 5,600만원, 포항의료원에 12억 500만원, 김천의료원에 43억 3,200만원 등 매년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의료원별 연평균 적자액은 안동의료원이 4억 2,500만원, 포항의료원이 9억 6,600만원, 김천의료원이 14억 7,900만원으로서 3개 의료원 모두 막대한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장 임용에 대해서 살펴보니 법적 임기가 3년으로서 포항의료원장, 김천의료원장은 현재 6년이 되어가고 안동의료원장은 무려 14년 8개월간 장기간 재직하고 계시는데 지사님께서도 이와 같이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계속 적자를 보는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만 하는지, 또한 의료원장은 어떤 절차에 의해 임명하는지, 이렇게 매년 막대한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간 임용 중인 의료원장을 유능한 전문경영인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원 흑자경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도 출자기관이 대구경북연구원을 비롯하여 총 14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기관장 임용에 있어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퇴직 공직자나 정치인보다는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를 공개 채용함이 원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도 산하 출자기관의 기관장 임용에 있어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출자기관별 기관장 연봉을 파악해 보니 적게는 4,000만원대에서 8,000만원대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산하 출자기관의 기관장 및 소속직원의 연봉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며, 또 기관별로 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등은 얼마이며, 매년 막대한 도비를 운영비 등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기관장 및 소속직원의 연봉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단순관리기관과 특정사업기관으로 분리하고 기관별로 업무성과와 경영성과 및 타 시도 유사기관의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업무 형평성에 따라 도 공무원에 준용하여 연봉 상·하한선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또 매년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성과에 따라 연봉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업무 및 의용소방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방사무 중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소방조직과 인력을 보면 2,108명으로 일반직 2,025명과 비교시 51% 대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385억 4,700만으로써 도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인건비가 928억 9,600만원으로써 67%이며 사업비는 11%인 153억 1,600만원입니다.

지난 설 연휴 첫날 경주에서 논두렁에 난 불을 끄고 내리막길을 달려오던 중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 현재 16년째 사용 중인 소방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소방관 3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

하여 지역 언론과 방송에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량, 소방장비가 전체 598대 중 50%인 300대에 이르며 또한 소요기준에 부족한 물탱크, 구조구급장비가 18%인 136대 정도로서 소요기준대로 소방장비를 보충하고 교체하려면 지금 사업비의 2배 이상인 최소 1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가 매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2교대 근무제를 앞으로 3교대 변경 시 추가로 810명, 119안전센터,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126명 등 모두 936명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서는 인력 충원 방안과 추가 인건비 및 부족한 장비 보충이나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교체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거 광역업무로 되어 있는 소방 업무를 중앙정부 업무로 환원하도록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대로 도 사무로 유지한다면 막대한 소방직 인건비는 일정부분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소방장비 확충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거 368개대 1만 1,920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화재나 재난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직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시 지역 의용소방대는 지사가 설치 임명하고 지원예산은 도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하고 있으며, 군지역 의용소방대는 군수가 설치 임명하고 예산도 군에서 전액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 업무이면서 의용소방대 조직편성과 예산지원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의용소방대 운영 예산은 총 얼마이며, 일원화해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와 법 취지에 맞게 의용소방대 조직이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정책적 결단을 바랍니다.

넷째,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입니다.

특정국가간에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철폐하여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공산품, 서비스, 농업분야, 섬유분야, 수산분야 등의 개방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은 농축수산업 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관련 단체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미 FTA 체결 시 쌀을 제외한 축산, 과일, 곡물, 채소 등 26개 품목에 대한 피해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농축산업 분야에서 우리 경북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5.1%에서 8.8%인 2,837억원에서 4,899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사과 전국

1위, 46%를 차지하는 포도 전국 1위, 24%를 차지하는 쇠고기 전국 1위입니다. 대두 20% 전국 2위, 닭고기 17% 전국 2위, 돼지고기 15% 전국 3위 등이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시대 진입과 영세농, 자급자족형 재래식 농업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농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서는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 수산물, 과수, 축산분야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오징어, 명태, 대구, 아귀, 고등어, 꽁치 등 수산물에 대한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미 FTA에 대응하여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경북 농업부분의 총체적인 재점검과 새로운 활력을 개척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센환자 복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한센환자를 살펴보면 모두 2,654명으로서, 이들 평균 연령은 74세이며 정착촌 18개소에 925명, 생활시설 2개소에 358명, 재가 1,371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센환자는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소규모 집단으로 정착촌 등을 형성하여 평생 동안 소외되고 어

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서는 사회적 약자이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센환자 복리증진을 위해 무료 의료혜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도내에 전문치료 병원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전문요양시설을 설립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한센환자 정착촌 등에 시설운영비 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국도비 28억 7,800만원 외에, 이분들에게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모든 분들이 노후에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간이요양시설을 확대 설립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중암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담임선택제」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학년 담임을 맡을 교사 20여명의 명단과 교사들의 사진, 담당과목, 학급운영방침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학생이 원하는 선생님을 선착순으로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학생, 학부모 등은 교육수요자들의 기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선생님들에게도 강한 동기부여를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담임선택제는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인기영합성 수업을 조장하고, 학생이 교사를 선택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근본을 도외시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교원평가제와 그 맥락이 같다

고 할 것입니다.

교원평가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도 선생님들은 어떻게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느냐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담임선택제나 교원평가제나 모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교육현장에서 경쟁의 원리가 빨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교수 사회에서는 이미 교수평가 점수제도 등과 같은 강의평가제도를 통해 경쟁의 원리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쟁원리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베 총리는 부적격 교사를 배제하는 교원면허갱신제도를 철저히 시행하여 영국의 경우와 같이 학교와 교원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학생수에 따라 교육예산을 차등배분하는 「바우처 제도」 등과 같은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글로벌 시대에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부터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도내 학교의 「담임선택제」를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용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관용 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경상북도도 큰 변화의 물결이 용트림하는 것 같은 희망이 본의원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 모 언론에 도 새마을과 엄기정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생기는 여가시간인 주말에, 주말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복지시설 안팎의 청소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목욕도우미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개인 모금으로 모은 성금으로 생활용품 전달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제야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에 기여함은 물론 나를 희생해 남을 돕는 자원봉사의 아름다움을 실천해 주신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보도를 접한 도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노인복지 차원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의학기술 발달, 물질문명의 풍요로움으로 노인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사회와 가정에서 내몰리는 노인들의 실업문제가 청소년 실업만큼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과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노인들에 한하여 노인교 통봉사대, 자연정화활동, 청소년 선도 등에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여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생산력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항구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자립지원형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자립형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서 노인인력관리사, 경로당 관리사 등 전문가를 시급히 채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건강상담, 문화·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2007년 노인일자리 사업내용을 보면 공익형 사업,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다원형 등 획일적인 지침으로 규제되어 있어 농촌과 도시의 생활환경은 지역 경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과 도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원 지침을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인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고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늘어나는 치매노인의 수발은 부양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가족에게도 불만과 갈등 속에서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치매노인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환자들의 치료 비용이 증가하고 가정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치매환자들이 요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신요양원 또는 사설요양기관에 의존하거나 가정에 방치되는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을 더욱 악화시키고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합니다.

첫째,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와 구체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하며,

지역의 보건소가 직접 치매 노인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을 장기적인 계획 하에 확충하고

단기간 내 확충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설치, 치매노인 부양가족을 위한 치매노인 위탁소 설립으로 치매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치매노인 위탁소란 부양가족이 직장에 출근하기 전 아침에 치매노인을 맡기고 저녁에 데려오는 어린이집과 같은 곳을 말합니다.

다음은 농촌 공동화의 심각성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전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농촌과 농업의 현실은 어려움을 떠나 가히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농도를 자처하는 우리 경북도만 하더라도 들녘에 희망에 찬 농민의 모습은 잘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최근 한미 FTA를 비롯한 개방의 물결은 우리 농촌과 농도 경북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는 실상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업 소득증대 차원의 획기적인 처방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붕괴되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기반을 먼저 확실히 다져 나가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사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산업화 시대의 역군인 농촌노인들이 생명산업의 보루로써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지만 과연 이분들이 떠나고 나면 그때도 농도 경북이라 자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제2의 농촌부흥을 꿈꾸는 후계농업 경영인도 심각할 정도로 매년 감소 추세로써, 농업육성에 큰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농촌 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와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볼 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농촌마을은 빈집만 고스란히 남고 농촌 들녘의 농지는 잡초로 무성한, 그야말로 폐허가 될 것입니다.

웰빙을 화두로 농촌을 갈망하고 있는 도시민들은 적지 않으나 하나 둘씩 떠나는 농촌으로 누가 과연 돌아갈 결심을 섰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 즉 농촌 공동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농촌 정주와 정착을 위한 장기적인 묘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식량안보 차원의 유휴농지에 대한 관리 대책 등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필의 옛 히트곡 “허공”처럼 농도 경북의 자존심으로 허공된 농촌이 히트치는 그날을 다같이 기대해 봅시다.

또한 각종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행정도 기업경영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 추세로서 새로운 세원발굴도, 효과적인 투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확보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창 이슈화되었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금 고갈사태도, 정부의 무분별한 공적자금 투입문제도 자금운영의 부실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도 이제 얼굴내기식 투자에서 벗어나 자금관리 하나라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여유자금의 운영관리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오히려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 등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기본 목표와 관리절차 및 평가 등의 제도가 절실하다고 보며, 또한 자금의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금지출의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자금증식을 위한 고이율 예치에 대한 노력이나, 자금관리 전담부서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실태, 금융기관의 자금관리에 대한 자문 및 건의사례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소방서 119 안전센터 신설문제 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재난발생 빈도에 비해 그 대응시설이나 인력 등 여건이 뒤따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구조의 관건은 물론 촌각을 다투는 출동시간이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난에 있어서도 가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 중 하나가

화재 관련 소방대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영양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가 적고 면적이 큰 군은 상대적으로 소방여건이 매우 취약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별 면적 등 현실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소방시설이나 인력이 형평성 있게 배치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 주시고,

또한 소방대기소가 설치되어 있어도 겨우 차량 한 대에 한명만 근무하고 있다면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재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취약지역에 119 안전센터 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양~안동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문제가 본의원의 지역구인 영양의 주민숙원사업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연한 과제라고 보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TV를 통해 소식을 접한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만, 몇 년 전 모 방송국의 “스핀지”란 프로에서 신호등 문제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이 문제는 다름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교통신호등이 단 하나밖에 없는 지역이 어디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곳이 바로, 그 답이 바로 경북에서도 우리 영양입니다. 당시 이를 시청한 시청자들에게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지역으로 엄청

뜨기는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큰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영양이 청정이라는 명예 뒤에는 아직까지도 교통실효등이 하나밖에 없는 항상 교통의 오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영양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경북의 자존심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교통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은 물론이고 4차선 국도 하나 없고 그나마 영양에서 안동간 2차선인 국도 34호선이 있으나 천재지변으로 두절되었을 때 엄청난 교통난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나 매미 때는 10시간 넘게 우리 영양은 완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지역 농산물 물류기능에 시급한 도로가 바로 영양 청기에서 안동 예안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920호선입니다. 장갈령이라고 불리는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서는 지역발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양군에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4.5km 135억원의 소요예산을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영양의 숙원, 나아가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관망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남은 시간은 혹시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현재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시군지회에 노인취업센터장이라고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요?

○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습니까?

○ 그렇다면 시군지회에 현재 어떤 분이 거기에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 해 봤습니까?

○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노인중앙회에서 했다고 하지만 도에서는 최소한 관리차원,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사후관리차원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경로당관리사라는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 지금 이 문제가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행되는 시군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 지침이 내려왔으면 다시 도에서 내려가고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이 경로당관리사를 두라고 공문을 보냈지요?

○ 그렇다면 예산도 같이 수반해서 보내야지 예산 없이 공문만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 그렇다면 행정적인 어떤 지도를 강력하게 하든지 해가지고 어느 시군은 하고 어느 시군은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상북도에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 하는 것마저도 지금 인건비가 제대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거든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경상북도에서 어느 시군은 시행하고 또 어느 시군은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어떤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행을 하자면 도비를 일부라도 지원해 가지고 23개 시군이 전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지금 보건복지부 공문에서는 이 경로당관리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내려왔습니까?

○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상북도가 초고령화사회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지요?

○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예산지원을 조금이라도 하면 될 건데 안 합니까?

○ 그분이 하는 일이 뭐니까?

○ 시군에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배치가 되어 있어도 지금 인건비가 지금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근무합니까?

○ 아니 시군비로 하도록 해 놓았지만 현재 시군비로 지원하는 곳이 세 군데 뿐입니다.

○ 지원이 된다고요?

○ 분명히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3개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전에 사업 유형별로 노인일자리 창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처음에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이 질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사업이 경직되어서 공익형 몇 %, 무슨 몇 % 딱 정해져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에 서도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따라서 좀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왜 안하고 있습니까?

○ 바뀌어가고 있지만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분명 담당자 이야기는 못 바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건복지부의 문서라든지 보면 “사업환경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사업량 배정” 해 가지고 도시·농촌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고 수요조사를 통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해야 실질적으로 그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큰 원칙적인 원론만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실성이 없는 일자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우리 도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나왔습니까?

○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하는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그 평가결과 점수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낮다고 생각합니까?

○ 우리 노인일자리어무 담당공무원도 근무기간이 대부분 1년 미만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문을 요한다면 최소한 그 자리에서 뭔가 내용을 알고 가야지 금방 갔다가 업무를 알려고 하면 다시 다른 부서로 인사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 연속성이 좀 부족하고, 또 현재 우리 도에서 별도의 예산 확보한 것은 없지요? 지금 국비 내려와 가지고...

○ 별도의 것은 없다?

○ 또 이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만족도조사를 한번씩 해 봤습니까? 안 해봤지요?

○ 그래 이런 사업을 해보면 정말 현재 우리 노인들이 이 사업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개선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알자면 이렇게 만족도조사도 가끔씩 해봐야지 이런 것도 안 해보고, 또 여성노인 참여비율이 없지요?

○ 물론 여기 사업 유형별로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공익형은 최소한 좀 축소시키고 또 공익형을 하는 데서도 보면 한 달에 20만원 지원하는 것은 공익성은 조금 실효성이 적으니까 돈을 15만원에서 20만원 좀 낮게 책정할 수도 있고 또 보면 복지형은 사업량이라든지 참여기간을 확대시켜서 연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경상북도가,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노인 어르신네들이 정말 과거에 우리 산업사회를 이끌어온 어르신네들이 노후에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더 잘 챙겨주시고 또 국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유가 없더라도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이 부분에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치매노인에 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략적인 근거에 의해서 3만 1,000명 정도라고 추정할 뿐이죠?

○ 현재 치매노인에 대해서 지역 보건소가 치매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내용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더 하려고 그래도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소방본부에도 추가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가서 질문을 하고 본 발언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치매노인 관리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경북에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공동화 현상 역시 농촌에 정주를 할 수 있게 하자면 농업부분에서만 대책을 강구한다기보다는 교육이라든지 의료,

문화 등 복합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농촌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귀농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자가 우리 농촌에 들어오려고 해서 마을에 있는 대지를 구입하면 집을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농지를 구입해서 그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당장 토지이용부담금을 물어야 됩니다. 단순하지만 이러한 정책조차 고치지 않고 도시에 있는 분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자금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금관리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행정직이 2, 3년 거쳐 가는 근무형태로는 아무리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명 배치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전문직을 더 확대 배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난상황의 대처도 단지 산골오지에 산다는 이유로 화재나 재난구조에 소외된다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예산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본의원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우리 2, 30년 넘게 소방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의 생각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정말 인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해답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소방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도정질문을 보면서 여러 분야에서 느낌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같은 경북도내에 살면서도 인구가 많고 적고, 개발된 도시나 낙후된 농촌이나의 관점이 아닌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편의나 보호는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도로 지정해 놓고 개설도 하지 않아 비상시 우회도로로서 통과도 못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지방도로의 4차선 확장이 필요한 곳이 있음을 보며 매우 씁쓸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제 본의원의 질문과 답변에서 제기된 여러 분야가 그냥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좀더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펼쳐져서 살맛나는 옹도 경북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부지사님, 오늘 마침 지사님이 안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부지사님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시하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존경하는 안순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경시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시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백만 도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조병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소득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계층별 소득격차는 통계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소득격차의 양극화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극대화시키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처지입니다. 또한 불균형개발로 인한 경북 지역발전의 양극화는 시급히 해소하여야 할 현안 중의 현안이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지도자치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외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균형개발을 최고의 목표로 내세우지 않은 지도자가 없었는데 결과는 항상 실망으로만 채워졌으며, 오늘 옹도 경북이 처해 있는 이 어렵고도 암담한 현실의 책임은 이제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3백만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경북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정진해야 할 때이며 우리가 먼저 도민들에게 다가서고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균형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상북도는 방폐장의 경주 유치에 따라 동해안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주요한 전략사업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미래산업이자 경북이 장기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아울러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동해안 고속도로, 철도 그리고 국제 허브항 건설 등 U자형 개발의 당위성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앞서있는 서해안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북의 특화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북발전의 전략을 보면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과 기존의 경산, 김천, 구미를 비롯한 서부권역에 집중되어 L자형 산업벨트가 형성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낙후지역의 대명사인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을 통한 경북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북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도정의 주요방향을 ‘먹고사는 문제, 자식 공부시키는 문제’ 등 민생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낙후된 경북 북부권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 구상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 북부권 지역의 소외는 오히려 갈수록 더 심화되고만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11개 시군의 면적은 1만 779km²로 경상북도 전체면적 1만 9,025km²의 과반인 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충청북도, 전라남도보다 더 넓습니다. 경북 북부권은 한 때 183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경상북도 전체 인구의 과반을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수도권과 대구, 포항, 구미 등 대도시로 인력이 급격하게 유출되면서 현재는 78만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인근 1개 군 인구보다 더 많은 2 내지 3만 여명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가 지니고 있는 힘이 곧 옹도 경북의 힘이라고 할 때 그 중심이 퇴락하고 사람이 떠나고 그 가치관마저 붕괴되어 버린다면 경북의 균형발전은 남의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정이 이리함에도 현재 경북 북부권의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은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무엇보다 경북 북부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하루 빨리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인근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도 산하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도 도청이전 등에 가려서 아무런 진전을 볼 수 없는 등 경북 북부권역의 실망감은 커질 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서 도청이전과 상관없이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을 낙후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으며 현재 이전이 확정된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 하나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장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자치단체들에게는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한가닥 희망이었음에도 도 산하 공공기관은 도청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지역에 민심달래기용으로 집중적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마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도청이전과는 별도로 도 산하기관의 이전 일정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문경은 과거 광산업이 활성화될 때에 비해 폐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제정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문경시를 비롯한 전국 7개 시군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2005년 말까지 지정이 되어 지원을 받기는 했으나 그간 지원이 미흡하여 수차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여 지정연한을 2015년까지로 10년을 늘렸는 바, 경상북도에서는 이 10년

동안 문경 폐광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형마트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제21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기록 ■

둘째, 대형마트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이 개방된 뒤 10년이 채 안된 기간에 대형마트 등이 200여개로 늘어나면서 우리 이웃의 슈퍼마켓 등은 무려 14만개나 문을 닫은 것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을 거의 초토화하다시피 하는 외지 대형마트 등의 부작용이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3개가 늘면 재래시장 9.4개의 매출을 뺏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재래시장 두 곳 중 하나는 몰락했다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하소연은 처절하기조차 합니다.

경북도내만 하더라도 1997년 김천에 이마트가 입점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7개의 대형마트가 영업 중이며 올해 중 6개의 추가입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실제 대형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지는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중소형 상가는 가게 하나에 4~5명의 가족들의 생활이 달려있는 생계형 자립형 독립사업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가족 전체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통계청 조사결과 우리 경북은 도내 3,000평 이상 대형소매점의 경상지수는 2000년 기준으로 100이라고 볼 때 2006년 11월 현재 382.0으로 전남 457.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2002년 경북지역 대형마트의 전체매출은 3,110억 원이었으나 그동안 대형마트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2006년 11월 말에는 매출액이 7,340억 원으로 늘어 4년 만에 두 배를 초과하는 등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중앙정부는 할인점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난다면서 뒷집만 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형마트에 의한 지역상권의 붕괴는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저소득층을 양산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어 단순히 유통구조나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형마트들이 지역에 남기는 지역 환원의 수준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경북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나 공산품의 구매도 생색내기에 그치는 등 각 지역주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 하지만 이런 생계형 영세민에게 치명적

인 가진 자의 폭탄을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치는 한이 있어도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이에 매출액의 송금제한을 통해 심각한 지역자본 유출을 막고 현지법인화를 통해 소득에 대한 정당한 지역환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지역 농축산물 판매율을 60~70%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지역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마트 측은 지역사회와 공생공존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상북도내의 골프장 건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현재 조성중이거나 앞으로 건설될 골프장은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보다 두배 이상으로 많은 등 도내 곳곳에서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을 포함한다면 현재 경북 도내에 골프장이 없는 곳은 영주시와 울릉군에 지나지 않으며 작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골프장은 현재 건설 중인 것까지 포함해 모두 322개로 총면적은 137km²인데 이 중에서 도내에는 현재 운영

중인 17개소와 준공을 앞둔 16개소를 포함 33개소에 28.7km²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프장면적을 비교했을 때 경북지역이 전국 총면적의 21%를 차지하는 턱없이 높은 비율로서 공급과잉이라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북도의 관계자는 지역의 4개 골프장에 대한 실사를 한 결과 골프장 한곳이 들어서면 건립초기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38억원, 다음해부터는 매년 15~20억원이 재산세 등으로 지역에 떨어지면서 지역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좁은 땅에 골프장만 지을 것인지, 그리고 정말 골프장의 건설이 지역재정에 도움만 된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골프장건설은 지역 내 울창한 산림훼손은 물론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환경오염과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발생케 하고 난개발이라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지도감독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특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

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많게는 수천억 원에서 적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총체적인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6년 말까지 전국 72개 특구 가운데 영양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 등 12개 지역이 지역특구로 지정된 바 있으며, 또한 포항 호미곶 등 12곳이 지역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특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2006 지역특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상북도의 지역특구 정책기획력을 과시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지방비와 민간자본 등을 합쳐 모두 9,089억원에 달하지만 특구사업을 추진 중인 대부분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10~30%대로 열악하여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어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자확보도 재정여건상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북의 경우 24개 특구사업에 3,337억원의 민자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지난 2006년 말까지 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또 여섯 번째, 학교폭력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자리가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사님도 안 계십니다. 힘이 빠져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속기록 ■

다섯 번째,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웰빙이 강조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으로 값싼 수입농산물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는 생산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진 소비자들은 미더운 먹거리가 생겼다는 점에서 시장규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06년 경북지역

의 친환경 농산물이 전국최대인 14만 톤으로 전국 생산의 22%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11,074ha로 23,432ha인 전남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출하량은 전남지역보다 3만 여 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경북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해 말에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제3회 친환경농업대상 평가에서 우리 경북도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따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희망은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최소한 4배에서 최고 10배 정도까지 값을 더 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FTA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우리의 농업이 새로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소비자층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신기술개발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추고 엄격한 품질인증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직거래를 늘려 유통마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이 친환경농산물 붐이 일어나면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군은 물론 도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같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비용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2배가량 더 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직거래 비중 역시 30%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관련한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질 높은 기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가를 대폭 낮추기 위해서는 집적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2006년 현재 경북내의 친환경농업단지 및 지구는 31곳에 그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교폭력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등 성인조직폭력 못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내 불량서클 등에 가입한 학생들은 지역별 연계조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성인 조폭들의 말투나 행동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탓에 피해학생들은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꺼리고 학교폭력이 성인조직폭력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2005년 교육부조사에 따르면 학교불량서클 가운데 다른 학교나 상급학교 성인폭력조직과 연계되는 경우가 7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에 성인폭력조직 7개 파에서 활동 중이던 고교생 90명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직폭력 서식환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폭력 조직 행동대원은 주로 10대 후반~20대 초반 청소년들로 이뤄지며 이들은 불량서클 등을 중심으로 폭력패거리를 형성해 성인폭력 조직과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전국 234개 경찰서 중 112개서의 담당자가 관할 구역 내에 폭력조직으로 발전하거나 폭력조직에 공급될 수 있는 폭력패거리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은 경기도 452명, 서울 350명에 이어 경북이 315명에 이르는 등 모두 2,587명에 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미 학교폭력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각계각층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기존의 대책과 다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시하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질문을 생략한 부분, 대형마트와 관련한 내용, 학교폭력에 관한 질문 등 3건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 보충질문을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육성대책에서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과 앞으로 지정할 곳이 어디어디인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특구가 지정된 게 문경 오미자, 상주 꽃감, 의성 마늘 이렇게 해서 12군데죠?

○ 그리고 지정할 곳이 포항의 호미곶해양레저특구, 경산의 종묘산업특구, 영양의 고추산업특구, 이렇게 특구를 많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상북도가 제일 많죠, 특구가?

○ 그런데 예산도 제일 많습니까?

○ 예산은 제일 적습니까?

○ 그러면 요건이 맞으면 계속 특구를 지정해 줄 겁니까, 요건을 강화를 해서 선별을 할 겁니까?

○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특구를 많이 지정한다고 해서 그 특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요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하자면 양보다 질을 더 우선으로 하는 그런 특구를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지역특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경이나 상주, 또 의성 이렇게 자립도가 참 낮습니다. 10%에서 3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아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특구만 지정을 한다 해서 사실은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재원확보를 해서 정말 이 특구가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또 문경 폐광지역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8월부터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2005년까지 총 사업비 1,000억원이 투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1,000억원이 투입된 만큼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것을 좀 자세하게 어떤 데 투입이 되었는지 큰 것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문경폐광지역에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 농수산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말에 제3회 친환경농업대상평가에서 경상북도가 전국 16개 광역자

치단체 중에서 최우수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 거기에 출품한 농산물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그렇습니까?

○ 그리고 지난번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농약피해로 인해서 저희 문경지역에 여러 번 현지에 방문을 해 주신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참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시고 해서 사실 그 농약사로부터 10억원이라는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농약사의 돈 받는다고 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중앙으로부터 사과나무 결실불량 시범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시범사업비가 내려오면 사실은 사과꽃이 피기 전에 그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과농가에 시범사업비가 전달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윤재탁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윤재탁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이 보상도 받고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범사업비는 결실불량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방상팬이라

든지 기동 시설을 하려고 진흥청으로부터 해서 문경이 3곳, 그 다음에 청송이 3곳, 또 피해 있는 지역에 군위, 안동, 예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진흥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지금 예산이 구체적으로 내려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당장 시설되는 것보다도 주로 그 시범 사업비가 서리를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시설을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과꽃이 피는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윤재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가능한 그렇지만 지금 꽃피고 하는 부분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흥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좀 제때제때 그 분들 참 돈 참 어렵습니다. 돈 없잖아요. 그러면 제때제때 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윤재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 : 8건

● 기 타 안 : 2건

■ 조례안 : 8건

□ 조례안

-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안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3월 2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3”을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도세징수실적”을 “도세징수실적, 재정력지수(지방
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
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를 “도세(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개발세중 원자력발전분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일반재정보

전금 총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를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나머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매회계연도 개시전”을 “매회계연도 개시월”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3에 규정된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개정 으로 관련 조항 정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일반재정보전금 이라함은 재정보전금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수 및 도세징수실적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일반재정보전금 이라함은 재정보전금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수 및 도세징수실적,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용어 정비
3. [생략]	3. [생략]	용어 정비
제4조(재정보전금의 재원) ①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전금의 재원) ①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개발세중 원자력발전분을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용어 정비
② [생략]	② [생략]	배분 비율 조정 및 신규 사항 삽입
제6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 ①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당해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제6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 ①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당해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징수 실적에서 당해 시·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⑤ [생략] 제7조(재정보전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도지시는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의 총액을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재정보전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시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징수 실적에서 당해 시·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나머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②~⑤ [생략] 제7조(재정보전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도지시는 매회계연도 개시월에 각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의 총액을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재정보전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생략]	용어 정비 및 일부 내용 삭제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3월 2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제안”이라 함은 도민 또는 공무원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도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도민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추천제안”이라 함은 경상북도 내 시·군에서 심사·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도지사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 2 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도민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군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시장·군수가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후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제8조(제안의 보완)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본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팀·과장 및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제안의 심사

제12조(심사기준 등) ①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조회 등) ①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6조(제안의 등급)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창안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경상북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인사상 특전) ①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안자가 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시장·군수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시장·군수가 제출한 추천제안이 채택되어 제안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 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은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노력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20조(상여금 지급)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상여금 지급기관)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은 도에서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지급하고, 시장·군수가 추천한 제안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기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③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년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3조(그 밖의 보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도지사는 채택 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경우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준용하고,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경우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5조(관리기간)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실시의 권고)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실시성과의 평가) ①채택제안의 소관 실시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7조제1항관련)

창안 등급	인사특전의 종류	인사특전 대상자
금상 · 은상 · 동상	특별승진	• 5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 기능직지방공무원 • 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특별승급	• 4급 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지방공무원 • 소방경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 특별승진을 부여하기 곤란한 자
	※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장려상 · 노력상	특별승급	• 경력직지방공무원 및 특수경력직지방공무원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비 고 1. 2인의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에도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특별승급으로 한다.
2.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20조제2항관련)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미 : 500만원 미만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3월 2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3.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시책 강화
4.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5.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6. 에너지 관련 홍보·교육 및 도민 참여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4. “미활용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5. “연료”라 함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6.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 또는 육불화황을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이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한 설비를 말한다.
9.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10.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11.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 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2. “산업 부문”이라 함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수송 부문”이라 함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4. “건물 부문”이라 함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5. “공공 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 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6.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자의 에너지이용시설에 대하여 자체자금 또는 시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17. “시민단체”라 함은 에너지절약 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18.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생산하여 이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9.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20. “센터”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말한다.

제4조(도의 책무) ①도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 보급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 도민 · 시민단체 · 학계 · 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도는 에너지 이용의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 · 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 · 군의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는 학교 · 도민 · 시민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도는 도민이 고효율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도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도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도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2 장 지역에너지 계획과 에너지위원회 운영

제5조(지역에너지 계획)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활용 에너지를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9. 기타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이 경우 수립된 지역에너지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도지사는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및 주요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담당 본부장 또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도 소속공무원, 도의회 의원, 에너지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 팀장 또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평가·자문
2.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부문별 에너지 시책

제11조 (산업부문) ①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송부문) ①도지사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개선토록 명령을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교통체증, 혼잡구간에 대한 원활한 교통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로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진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시 별도 조례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카풀,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며, 필요할 경우 시민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건물부문) ①도지사는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 계획서 등 에너지 관련분야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절약 관련기관에 설계서의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부문) ①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 사용
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산업자원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②도지사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제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4. 관용차량 부제 실시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건축·도로·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조례의 제·개정시에는 에너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다.

제 4 장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지사는 관할 지역내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 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이 설치의무대상기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세제·재정지원 등) ①도지사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 시책과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에너지 대상) ①도지사는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매년 “경상북도에너지대상”(이하

“에너지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에너지대상은 기관·단체·기업부문과 개인유공자 및 우수 시군에 대하여 선정·시상할 수 있다.

③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 상장을 수여 할 수 있으며,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④수상자는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3월 2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경상북도지사의 사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2 중 11호 및 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기공사업 관계 (1) 공사업의 등록신청 (2)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3) 공사업의 승계 신고 (가) 공사업의 양도·양수 (나) 공사업의 상속신고 (다) 공사업의 법인합병·분할 (4) 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가) 양도·양수, 상속, 법인합병에 따른 재교부 (나)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난이 부족함에 따른 재교부 다만, 제11호 (2), (3)목의 수수료는 공사업자 단체 에서 현금 징수함.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40,000 30,000 30,000 5,000 30,000 5,000 5,000
12. 전력기술 관계 (1) 설계업의 등록신청 (가) 종합 (나) 전문1종 (다) 전문2종 (2) 설계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가) 종합 (나) 전문1종 (다) 전문2종 (3) 감리업의 등록신청 (가) 종합 (나) 전문 (4)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가) 종합 (나) 전문 (5) 설계·감리업의 변경등록 (가) 재발급 (나) 등록변경신고(기술인력 변경 제외)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50,000 30,000 20,000 45,000 25,000 15,000 50,000 30,000 45,000 25,000 5,000 5,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개정이유
제3조(징수 방법)①~③ 생략 ④(신설)	제3조(징수방법)①~③(현행과 같음) ④(신설)경상북도지사의 사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수료를 현 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법개정에 따른 규 정 신설

【별표2】

제증명등수수료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구분	기준	요액	구분	기준	요액	
1-10생략	생략	생략	1-10(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신설)			11. 전기공사업 관계			법 개정 에 따른 규정 신설
			(1) 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	
			(2)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1건	30,000	
			(3) 공사업의 승계신고			
			(가) 공사업의 양도양수	1건	30,000	
			(나) 공사업의 상속신고	1건	5,000	
			(다) 공사업의 법인합병분할	1건	30,000	
			(4) 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가) 양도양수, 상속, 법인합병에 따른 재교부	1건	5,000	
			(나)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난이 부족함에 따른 재교부	1건	5,000	
			※11호의 (2),(3)목은 공사업자단체가 현금징수			
12.(신설)			12. 전력기술 관계			
			(1) 설계업의 등록신청			
			(가) 종합	1건	50,000	
			(나) 전문1종	1건	30,000	
			(다) 전문2종	1건	20,000	
			(2) 설계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가) 종합	1건	45,000	
			(나) 전문1종	1건	25,000	
			(다) 전문2종	1건	15,000	
			(3) 감리업의 등록신청			
			(가) 종합	1건	50,000	
			(나) 전문	1건	30,000	
			(4)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가) 종합	1건	45,000	
			(나) 전문	1건	25,000	
			(5) 설계·감리업의 변경등록			
			(가) 재발급	1건	5,000	
			(나) 등록변경신고(기술인력 변경 제외)	1건	5,000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3월 2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 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⑩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30조중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휴가업무예규」 ”를 “ 「국 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휴가업무예규」 ”로 한다.

별표 3 구분란의 출산란 밑에 입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입	양	본	인	14
---	---	---	---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제22조제6호의2, 제23조제2항 및 제10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근무시간) ①~③ (생략) <신설>	제12조(근무시간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 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 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 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u>다만, 법령에</u> <u>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u> <u>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u> <u>러하지 아니한다.</u>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만,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 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현행	개정안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6.(생략) <신설> <u>7.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u> 8.~ 9.(생략)	제22조(공가) ----- ----- ----- ----- ----- 1.~ 6.(현행과 같음) 6의2.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 8.~ 9.(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 ⑨(생략) <신설>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 ⑨(현행과 같음) ⑩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현행	개정안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휴가업무예규」를 준용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일 수</th></tr><tr><td>결혼</td><td>본인</td><td>7</td></tr><tr><td>출산</td><td>배우자</td><td>3</td></tr><tr><td><신설></td><td><신설></td><td><신설></td></tr><tr><td rowspan="3">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2</td></tr><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2</td></tr></table>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신설>	<신설>	<신설>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30조(준용) ----- -----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휴가업무예규」 -----.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일 수</th></tr><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r><td>입양</td><td>본인</td><td>14</td></tr><tr><td rowspan="3">--</td><td>-----</td><td>--</td></tr><tr><td>-----</td><td>--</td></tr><tr><td>-----</td><td>--</td></tr></table>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구분	대 상	일 수	--	--	--	--	---	--	입양	본인	14	--	-----	--	-----	--	-----	--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신설>	<신설>	<신설>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구분	대 상	일 수																																					
--	--	--																																					
--	---	--																																					
입양	본인	14																																					
--	-----	--																																					
	-----	--																																					
	-----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3월 2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급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기타교육기관장·각급학교장·교육위원회 의사국
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기타교육기관장·각급학교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장 · 기타교육기관장 · 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수 임 기 관
공 통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교 육 장
초·중등 교육과	1.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수리 및 징계 요구	교 육 장
중등교육과	1. 중학교 특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교육실습생 배정동의 및 지도·감독 3. 학생야영장의 운영지도·감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장 교 육 장
평생교육 체육과	1.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폐 및 지도·감독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평생교육시설의 설·폐 및 지도·감독 3. 도서관의 운영지도·감독(구미, 안동, 상주도서관 제외) 4. 학생운동 경기대회 참가 5. 학교급식 운영지도 6.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및 의견서 발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장 교 육 장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수 임 기 관
총 무 과	1. 교육청 및 관할지역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기타교육기관(장학관·교육연구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타교육기관 제외)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 ①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신규임용·승진임용 및 강임제외) 및 경징계 ②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승진임용제외) 및 경징계 ③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대우공무원 선발 ④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겸직허가 ⑤ 임시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제확정	교 육 장 " " "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장, 특수학교장, 기타 교육기관장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4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타교육기관) 교육장·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기타 교육기관장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4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타교육기관)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수 임 기 관
총 무 과	4.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기타교육기관 장(장학관·교 육연구관 및 4급이상 공 무원을 장으 로 하는 기타 교육기관)
기획예산과	1. 교육장소관 예산에 계상된 각종 보조금 의 보조결정 및 교부 2.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교 육 장 "
학교운영 지원과	1. 유치원·공민학교의 설립·폐지인가 2.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 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 교의 학급편제 및 증설인가 3. 제2호의 각급학교의 학칙인가 4. 제2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개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사립학교 법 제7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 인가 5. 제2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 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지도·감독	교 육 장 " 교 육 장 " "

소 관 별	위 임 사 무 명	수임기관
학교운영 지원과	6. 제2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담보·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허가 7. 제2호의 사립각급학교 유지법인의 예·결 산에 관한 지도·감독 8. 제2호의 사립각급학교의 운영관리 및 예· 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9. 제2호의 사립각급학교 유지법인의 장기 차입 승인	교 육 장 " " "
재무관리과	1.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초등학교·중 학교·고등학 교장
교육시설과	1.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도시관리계획(학 교) 입안의 제안	교 육 장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기타교육기관장·각급학교장·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6조----- -----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기타교육기관장·각급학교장----- ----- ----- ----- -----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현행과 같음)		
[별표] 교육장·기타교육기관장·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장·의사국장에 위임하는 사항			[별표] 교육장·기타교육기관장·각급학교장에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수임기관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수임기관
공 통	1. (생략)	교 육 장	공 통	1. (현행과 같음)	교 육 장
초·중·등 교육과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감(원감)·교사의 관내전보	교 육 장	초·중·등 교육과	<삭제>	<삭제>
	2.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원감)·교사 임지지정 및 초등학교 교사 신규임용	"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수임기관	소관별	위임사무명	수임기관
초·중등 교육과	3. 제1호 각급학교의 교원의 휴직·복직 (중학교 교장 제외) 과 교감(원감)·교사 의 의원면직·직위해 제 및 교사의 겸임	교육장	초·중등 교육과	<삭제>	<삭제>
	4. 제1호 각급학교 교 원의 호봉재확정 및 교장의 정기 승 급	"		<삭제>	<삭제>
	5. 제1호 각급학교의 기간제 교사 임용	"		<삭제>	<삭제>
	6. 하급교육청 교육전 문직(교육장 제외) 의 호봉재확정 및 정기승급	"		<삭제>	<삭제>
	7. (생략)	"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기타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일반직 제 외)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확정	기타교육 기관장		<삭제>	<삭제>
	9. 기타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부 서지정 (기타교육 기관장 제외)	기타교육 기관장		<삭제>	<삭제>
	10. 보직교사의 임용 (전보 제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특수 학교장		<삭제>	<삭제>
	11. 제1호 각급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 교감·교사의 정기 승급	"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수임기관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수임기관
초 등 교육과	1. 공립의 유치원 교사의 임용	교 육 장	<삭제>	<삭제>	<삭제>
	2. 공립유치원 강사의 임용	공립(병설) 유치원장		<삭제>	<삭제>
	3. 공립유치원장, 원감의 겸직 임용	교 육 장		<삭제>	<삭제>
	4. 공립특수학교 교감·교사의 호봉제 확정	특수학교장		<삭제>	<삭제>
	5. 공립초등학교 교감의 인사기록카드 관리	교육장		<삭제>	<삭제>
중 등 교육과	1:2. (생략)	(생략)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임용	고 등 학 교 및 특수학교장		<삭제>	<삭제>
	4. 교감·교사의 호봉 재확정	〃		<삭제>	<삭제>
	5. 교원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	〃		<삭제>	<삭제>
	6.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평 생 교 육 체육과	1.~4. (생략)	(생략)	평 생 교 육 체육과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사업 및 재산 변경은 제외한다)·임원의 취·해임 및 지도감독	교 육 장		<삭제>	<삭제>

[illegible]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수입기관	소관별	위 입 사 무 명	수입기관
총 무 과	3.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재확정	교육장·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기타교육기관장 [장학관 및 4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타 교육기관]		3. (현행과 같음)	----- ----- ----- -----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4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타 교육기관)
	4.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 내 전보권	의사국장		<삭제>	<삭제>
	5.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면직 등 임용권전반	"		<삭제>	<삭제>
	6.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권 <신설>	" <신설>		<삭제>	<삭제>
				4.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기타 교육기관장(장학관·교육연구관 및 4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타 교육기관)
기 획 예산과	1.2. (생략)	교육장	기 획 예산과	1.2. (현행과 같음)	교육장
학교운영지원과	1.~6. (생략)	교육장		1.~6. (현행과 같음)	교육장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수임기관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수임기관
학교 운영 지원과	7. 제2호의 사립각급학교 를 유지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임원 취·해임승 인(임시이사 선임 제 외) 및 이사회 소집승 인	"		<삭제>	<삭제>
	8.~10. (생략)	"		8.~10. (현행과 같음)	"
	11. 제2호의 사립각급학교 유지법인의 설립신청 및 해산신청	"		<삭제>	<삭제>
	12. 제2호의 사립각급학교 유지법인의 정관변경 (목적·명칭·유지학교 해 산에 관한 규정을 제외 한다.)	"		<삭제>	<삭제>
재무 관리과	1. (생략)	"	재무 관리과	1. (현행과 같음)	"
	2. 교육청 및 유치원·초등 학교·중학교·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		<삭제>	<삭제>
교육 시설과	1.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도시계획(학교)시설 결 정 신청	"	교육 시설과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 도시관리계획(학 교) 입안의 제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3월 2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된 간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위원장으로 위원회에서 호선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3월 27일

경상북도의회규칙 제 호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66조제3항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 동의안 : 2건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서
-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 4 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서

(2007 ~ 2010)

차 례

I.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	185
1. 배경과 필요성	185
2. 법적 근거	186
3. 목 적	186
4. 달성목표	187
II. 지역현황과 전망	188
1. 지역사회 진단	188
2. 의료이용 현황	191
3. 보건의료자원 현황	196
4. 민간조직 현황	197
5. 건강수준 현황	198
6. 지역사회현황 요약	200
III. 주요 보건의료사업 추진 총괄표(2007~2010)	206
IV. 주요사업 예산투자(추계)	207

I.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

1. 배경과 필요성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경제성장 및 다양해진 도민의 욕구를 중앙에서 획일적이고 하향식 방법으로는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관심의 확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업무의 범위가 한 단순 진료업무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전반적 보건 사업범위로 확대되고 있어 보다 실제적이고 짜임새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요구되었고, 2003년부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가 체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 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 수립 과정과 계획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 평가도 함께 하게 되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4년간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단기 의료 서비스를 계획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을 높이고, 목표를 명확히 하여 도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급격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과 지역의 특성을 국가의 보건 의료 정책과 부합되게 계획하고 시·군의 보건의료계획을 총괄·조정함으로써 보건 의료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2. 법적 근거

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나.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며,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7년~2010년의 4년간의 계획임.

3. 목 적

도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지역보건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도민에 대한 포괄적인 평생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며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다.

4. 달성목표

- 가. 도민의 건강한 삶을 통해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 나. 사회계층간 지역간 건강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 다. 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라. 주민참여를 통한 개인건강유지 동기조성과 자조능력을 배양한다.
- 마.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출산양육을 지원한다.

II. 지역현황과 전망

1. 지역사회 진단

가. 인구 현황 및 전망

1) 인구변화 및 구조

2006년도 전국 주민등록 통계 조사 결과에 의하며 경북은 1,006,080가구에 평균 세대당 인구수 2.42명이고, 총인구는 2005년 12월 31일 기준 2,711,900명이며, 남녀 인구 구성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는 없으나, 남성인구가 1,363,211명으로 여성인구 1,348,155명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당 가구원수는 1985년 4.1명, 1998년 3.1명 2001년 2.9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6년 통계청 수치는 2.42명을 나타내고 있다.

2) 연령별 인구구조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사업량 산출은 2005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제4기 인구현황의 특징을 보면 유년층의 비율은 전년 대비 2.9% 감소추세를 보인다. 유년부양비는 생산가능 인구 100인당 부양해야 할 유년인구가 25.3명으로 전국의 유년부양비 26.3명보다 적은 수치이다. 이는 부양부담의 경감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으나, 앞으로 생산 가능인구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년인구의 감소는 경북지역발전에 위험적 요소로 적용할 것이므로, 유년인구의 증가를 위한 저 출산 대책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노년층 인구는 전기노령인구에서는 큰 증가추세를 보이진 않으나, 후기노령인구에서 4.8%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년부양비 역시 19.37명으로 전국의 12.28명보다 더 많은 수치를 보인다. 유년인구,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태에서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노인부양부담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산업별 인구구성

1) 산업별 인구구성과 산업체 수

경상북도의 경제활동인구는 1,703,157명이며 그 중 1차 산업 인구가 504,737명으로 29.64%, 2차 산업인구가 16.70%를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인구가 53.65%를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1차 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으나, 전체적으로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체 수와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지역경제의 어려운 면을 보이나, 산업보건 관리자수는 눈에 띄는 증가

추세로 사업장별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보건관리가 점차 나아지는 면을 보이고 있다.

2) 의료보장인구와 의료취약인구

경상북도의 의료보장 인구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45.7%로 전국에 비해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보험가입자”가 40.9%, 공·교 보험 가입자 8.7%이며, 의료급여 가입자가 4.7%로 전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의료급여를 받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많은 것은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005년 기준)

경상북도의 의료취약인구는 369,539명으로 전체인구의 13.63% 정도이며 이중 독거 노인이 72,822명 (2.69%), 장애등록자가 101,837명(3.76%),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가 114,596명(4.23%), 독거노인수가 79,099명(2.92%), 소년소녀가장세대 1,185(0.04%)으로 나타났다.

3) 연도별 학교수 및 학생 수와 보건교사 수 및 영양사 수

경상북도 관내 학교수가 2000년에 비해 7개소가 감소하였으며, 초등학생 수가 9,700명 감소의 추세로 보면 저 출산율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의 수가 18,864명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는 수치를 보면 교육을 위한 타지역 이동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북도 내 총 학교 수 992개소 가운데 945개소가 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거의 모든 학교에서 급식은 이뤄진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비해 영양사 수는 557명에 불과 하여 급식의 영양관리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모습을 보이며, 또한 양호 교사수도 581명으로 포항, 경주 등 시(市)들에 비교하여, 군(郡)들의 작은 학교에서 청소년의 보건관리가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 점차적으로 학교 보건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급식의 전체 실시와 영양사, 보건교사의 인력 배치로 좀 더 나은 보건환경 속 청소년의 건강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2. 의료이용 현황

가. 환자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비율

우리 도는 2003년을 기준으로 2005년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 외래환자는 약1% 증가 하였고, 입원환자도 약2% 증가 한 것을 볼 때 환자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환자의 지역 외 유출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의료기관의 동일지역 내 환자 이용비율

우리 도는 2003년을 기준으로 2005년에는 지역의료기관의

지역 내 환자이용 중 외래환자는 증가추세이긴 하나 거의 변동이 없고, 또한, 입원환자는 감소한 것을 볼 때 지역의료기관이 지역 내 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량이 감소하고 있어 타지역 환자의 유입이 조금씩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 보험종류별 이용현황

보험의 종류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우리 도는 2003년 기준으로 88.2%, 전국은 92.04%로 전국에 비해 약 4%낮은 추세이며, 2004, 2005년 87.79% 86.44%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1종과 의료급여 2종은 각각 약0.5%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라. 연령별/성별 의료이용 현황

경북의 연령별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2005년의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10~19세의 청소년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평균 5%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을 기준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또한 남·여인구의 의료이용 현황은 2003년 기준으로 2005년에는 남자는 2.57% 증가하였으며, 여자 1.62%

증가하였으나 남자에 비해 의료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마. 상위 10 상병 구성비(입원 ·외래)

2003년 ~ 2005년까지 10순위 안에 속한 상병의 변화는 거의 없고 약간의 순위 변화가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진료 건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경우 기타급성상기도감염과 급성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은 전반적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며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동쪽에 위치한 경북은 비교적 전국에 비교하여 조금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외래 진료의 수치 역시 기타급성상기도감염과 급성인두염 및 급성편도염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1차 산업의 빈도가 높고 고령인구가 많은 경북지역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관련 건강증진사업, 예방중심사업인 건강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바. 주요 질병별(치료)유병율(실인원/주민수)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치주질환의 유병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현상을 보이며, 전염병, 관절염,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간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주질환은 만성질환으로서 시민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스스로 구강검진을 생활화하여 구강질환의 예방 및 조기 치료사업을 확산시키며, 올바른 치아관리 실천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홍보에 주력하여 치주질환 유병률 감소에 노력증대 강화해야 한다.

전염병 역시 유병률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의 전염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전염병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질병발생 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고혈압과 당뇨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인해 유병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관절염과 같은 질병에 관해 시군별 보건의료서비스의 불균형으로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유병률 감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암의 경우 증가율이 없이 주요 암에서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정신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생활양식의 다변화로 인해 정신질환에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낳고 있다. 지역주민의 정신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사업 실시를 요한다.

사. 고혈압 환자 연간 진료일수 분포

2005년 보건사업실적은 예방접종 관리사업에 있어 집중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접종률은 전체인구에 비해 낮음으로 예방적 차원의 접종률을 높임이 요구된다.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지소의 수치가 높으나 보건의료원과 비교하여 그 수에 비해 업무의 실질적 사업율은 떨어지며, 보건지소의 인력충원과 전문성의 키워 보건지소를 통한 직접 방문 진료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실현이 요구된다.

아. 만성질환 환자 등록율

전반적으로 2003년에 비하여 2005년에 이르러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있어 등록율이 증가하는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증가율에 비해 등록율은 높은 수치가 아니어서, 만성질환에 대한 인식과 질환의 관리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를 높여 지속적 관리를 통한 합병증 발생율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에 주력함이 요구된다.

자. 보건사업별 등록환자 연간 방문일수

보건사업별 등록환자 연간 방문일수를 보며, 모자보건사업이 가장 활기를 띠며 국가 시책사업인 저출산 대책 홍보의 효과가 서서히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전염병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04년을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3. 보건의료자원 현황

가. 의료기관 및 인력

1) 관내 의료기관 및 인력현황

의원(정신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이 1,067개소, 병원(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기타특수병원 제외)이 50개소, 종합병원이 15개소, 정신병원(정신과의원 포함) 11개소, 치과 병·의원이 447개소, 한방병의원이 473개소로 총 3,114개소이다

의료기관의 총 병상수는 21,695병상으로 의원이 3,416병상, 병원이 7,307병상 종합병원이 6,779병상, 정신병원이 1,1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내 의사수는 보건소 인력을 제외하고 2,393명 간호사수는 4,368명 약사수는 1,076명 구급차 수 365대 응급구조사 수 22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보건의료관련 민간 현황

신고 된 총90개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 14개소, 노인복지시설 47개소, 장애인복지 20개소, 기타시설 9개소가 있다. 미신고시설은 총 31개소로 아동복지시설 2개소 노인복지시설이 13개소, 부녀복지시설 1개소, 장애인복지시설8개소 기타시설이 7개소이다.

4. 민간조직 현황

가. 보건기관 조직진단

우리 도에는 보건(의료원)소 25, 보건지소 217, 보건진료소 312개소가 있어 오지마을까지 보건의료서비스가 골고루 미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건기관 조직을 진단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나. 인력현황

보건기관 종사자는 총 2,283명으로 보건소에 1,088명, 보건지소에 903명 보건진료소 에 292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인력은 보건소가 714명 최소배치 기준에 802명이, 보건지소는 1,333명 최소배치기준에 897명이, 보건진료소가 310명 배치기준에 292명이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최소 전문 인력이 2,357명이 있어야 하나 1,991명이 배치되어 366명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건강수준 현황

구분	세부지표	현재수준		제시한 자료원	
		전국	경북	전국	경북
흡연	성인 흡연율	남자 50.3% 여자 3.1% (20세이상 성인 2005년)	남자 41.1% 여자 6.9% (200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경북도민 보건의식행태 조사연구
	청소년 흡연율 (고3)	남학생21.5% 여학생4.9% (2004년)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성인 금연 시도율	남자 59.3% 여자 56.7% (2005)	남자 85.4% 여자 75.4% (200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경북도민 보건의식행태 조사연구
음주	고도위험 음주자 비율	남자 14.9% 여자 2.5% (2005년)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1인당알코올소비량 (15세이상 성인)	9.3ℓ (2003년)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성인 월간 음주율	51.9% (2005년)	40.4% 남자 48.1% 여자 36.0% (200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경북도민 보건의식행태 조사연구
	청소년 월간음주율	27.3% (2005년)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운동	성인 운동실천율 (주5일,일30분이상, 중강도운동실천율)	18.8% (2005년)	8.4% (주4회이상 2005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경북도민 보건의식행태 조사연구
	청소년운동실천율 (주3일,1일20분이상 고강도운동실천율)	31.9% (2005년)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영양	적정체중인구비율 (18.5≤신체질량지수 ≤25)	63.3% (2005년)	57.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경북도민 보건 의식행태 조사연구
	저체중 성인인구비율	4.3% (2005년)	16.6% (200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경북도민 보건 의식행태 조사연구
건강 검진	건강검진 경험률	51.3	55.6	2004국민건강 보험공단	2004국민건강 보험공단
	암검진 경험률	14.7	14.1		
	정기적인 혈압측정 실천률	85.2	86.2	2005국민건강 증진종합계획	2005경상북도 만성관리사업단
전염 성 질환	HIV/ADIS 감염자 및 환자수/에이즈수진율	327 (2001)	7 (2001)	2004년 질병관리본부	2004년 질병관리본부
	끓인물 섭취율	42.3	48.5	수돗물불신관련 여론조사	수돗물불신관련 여론조사
구강 보건	정기적인구강검진 실천율	20.4	10.0	2005년국민 건강증진종합 계획기	좌동
	치면세마 경험률	74.9	54.6	2004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좌동
	현존 자연치아수 (65세 이상)	12.06	16.3(2003)	2003년국민구 강실태조사	좌동
	5세 우식경험 유치 지수	4.12	4.01	2003년국민구 강실태조사	좌동
	12세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	3.25	3.32	2003년국민구 강실태조사	2000년경북12 세아동구강실태
암	국가암 조기검진 이행 수급률	20.0(2005)	20.0(2005)	국가암조기검진 정보시스템	국가암조기검진 정보시스템
정신 건강	심한 스트레스 경험률	63.2	75.3	한국보건사회 연구원국민건강 영양조사	경북도민 의식행태(2006)
	적정수면 실천율	52.6	25.1		

6. 지역사회현황 요약

가. 경상북도의 강점과 문제점

1) 경상북도의 강점

자치단체장의 보건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아 예산, 인력 등의 확보가 용이하며, 관리자의 높은 인적, 물적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업무추진의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심어주므로 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다.

보건소, 보건지소 간 전산망(LAN) 구축으로 직원들의 사무자동화 능력이 향상 되고 프로그램 연계로 인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자료 공유가 가능하며, 민간 관련조직과의 협력관계가 양호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복지와 건강을 지지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6.4.11일 보건위생과내 저출산 대책팀의 조직을 신설하여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저출산 문제 등의 홍보 사업 등을 발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2) 경상북도의 문제점

도의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고령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3개 시군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저하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및 학생 등의 연령층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며, 학교당 학생수가 많지 않음으로 보건교사, 영양사 등의 보건관련 전담교사가 없는 곳이 많아 업무추진에 따른 협조와 보건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에서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 보건 의료기관의 서비스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도 북부지역의 농(農)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의 의료 기관의 낙후로 인근지역의 2, 3차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짐으로 3차 의료 기관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보건 기관 사업에 있어서 진료사업은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보건지소의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건강증진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

건강생활실천(금연, 절주, 운동, 식습관 변화)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률이 낮으며 의지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퇴행성 질환인 고혈압(경북 8.96%, 전국 8.22%) 및 당뇨병(경북 3.95%, 전국 3.59%)의 치료 유병율이 저조하다.

전통 유교문화의 영향이 커서 남아선호사상, 내면적인 성문화의 발달로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발생한다.

경제활동인구 중 반(半) 이상이 농업인구이며 농업기술의 발달로 농한기가 따로없어 자원봉사자 활용이 어렵다.

3) 지역사회 현황 결과 요약 및 지역건강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추후전망

2006년도 경상북도는 인구감소율 2.42명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한 수치이며, 인구 감소율이 -0.25%를 감안하면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0.57%)을 하회하는 인구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는 유년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으로 이는 유년 부양비의 감소하는 수치로 도 나타난다. 부양부담의 경감보다 앞으로의 생산 가능인구의 수가 적다는 의미가 큼으로 경북 지역 발전에 위험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경상북도는 고령화율 13.3%로 전국의 8.8%에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고령화사회(7.2%) 넘어 이미 고령사회(14%)로 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년 부양비 19.37명으로 전국 12.28명보다 높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2026년 초고령 사회(20%)에 대비하여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6년 4월 11일 보건 위생과내 저출산 대책팀의 조직을 신설하여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불임 부부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저출산 문제 등의 홍보사업 등을 발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경북의 산업구조는 많은 시·군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으나 전반적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산업화의 척도가 되는 2차 산업의 종사자는 산업체와 근로자 모두 감소추세를 보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992개소 학교의 95% 이상의 945개소가 급식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영양사, 양호 교사의 수가 부족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보건 관리의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 관리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의 의료보장 인구는 전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의료이용인구는 차츰 낮아지고 있다. 이는 유아인구의 의료이용 빈도는 거의 100%에 이르나, 노인인구의 의료이용 인구가 점차 줄어들음에 나타난다.

이는 경북의 노년인구는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의료취약인구의 증가와 의료급여 대상자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질병 유병율이 높은 노인인구가 경제사정과 낮은 치료 순응도로 인해, 대체 의학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여 전문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이용 인구의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미 고령사회(14%)에 진입한 경북에서 노인인구는 보건 의료사업에 있어 중대한 과제 이므로 자기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노인건강관리 전문보건교육이 필요하다.

2003~2005년 보건기관 포함 의료기관 상병에서는 전국과 유사하게 황사로 인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1차 산업의 빈도가 높고 고령인구가 많은 경북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노인관련 건강증진사업에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있어서는 시군의 만성 질환사업으로 인해 유병률은 감소하나, 진료일수 등은 감소하고 있어, 합병증의 위험이 큼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에서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수준의 낮음으로 진료비의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됨으로, 보건기관을 통한 사업관리가 무엇 보다 중요함이 나타났다.

지역 보건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방접종이나 간단한 진료 등에 집중되며, 치주질환, 전염병, 암(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짐에 홍보가 되지 않는 것과, 도내 보건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기에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앞으로 보건기관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의료공급체계의 균형을 이룸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질병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체계와 보건교육도 요구되며, 특히 보건지소는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의료공급의 직접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 변화가 요구 된다.

Ⅲ. 주요 보건의료사업 추진 총괄표(2007~2010년)

사업분류	사 업 명		
중점사업	◦ 건강생활실천사업 활성화 ◦ 저출산 종합 대책 사업 ◦ 암 관리 사업		
개별사업	◦ 응급의료계획 ◦ 병원급 의료기관 지도감독 업무 ◦ 병상수급계획 ◦ 암 관리계획 ◦ 정신 보건 사업계획 ◦ 구강보건사업계획		
	그 외 개별사업	행정	◦ 한방공공보건사업 ◦ 공중보건의사 보건의료원 관리 ◦ 취약지역 중심의 도시보건지소 설치·운영 ◦ 재활보건(장애인)사업 ◦ 공공병원 의료원특성화 사업 자립 계획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 노인보건사업 및 노인전문요양병원 확충
		방역	◦ 전염병 관리사업 ◦ 전염병 정보감시체계 구축 ◦ 한센병(나병)관리 사업 ◦ 결핵관리사업
		건강	◦ 방문보건사업 ◦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 ◦ 보건교육 경연대회
		저출산	◦ 모성보건 건강관리사업 ◦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의약	◦ 의·약무 마약류 관리사업 ◦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식품	◦ 식중독 예방사업 ◦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관리

IV. 주요사업 예산투자(추계)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계	241,111,855	59,243,518	58,488,102	59,274,467	64,105,769	
	국 비	136,717,969	33,914,841	33,116,167	33,372,784	36,314,177	
	도 비	30,872,148	7,121,819	7,513,757	7,909,793	8,326,780	
	시군비	73,521,738	18,206,858	17,858,178	17,991,890	19,464,812	
공 보 의 사	공 건 료 업	계	1,761,000	312,000	388,200	483,000	577,800
	국 비	891,000	162,000	178,200	243,000	307,800	
	도 비	435,000	75,000	105,000	120,000	135,000	
	시군비	435,000	75,000	105,000	120,000	135,000	
전염병 관 사	관 리 업	계	28,434,360	6,597,108	6,926,964	7,273,312	7,636,977
	국 비	13,745,760	3,189,179	3,348,638	3,516,070	3,691,873	
	도 비	7,145,299	1,657,794	1,740,684	1,827,718	1,919,104	
	시군비	7,543,301	1,750,135	1,837,642	1,929,524	2,026,000	
한센병 관 사	관 리 업	계	8,616,939	1,999,232	2,099,193	2,204,153	2,314,361
	국 비	5,426,383	1,258,985	1,321,934	1,388,031	1,457,433	
	도 비	2,902,209	673,347	707,014	742,365	779,483	
	시군비	288,347	66,900	70,245	73,757	77,445	
모 성 · 영 유 아 보 건 사	업	계	7,719,259	1,790,959	1,880,508	1,974,533	2,073,259
	국 비	3,115,592	722,854	758,997	796,947	836,794	
	도 비	2,167,455	502,875	528,019	554,420	582,141	
	시군비	2,436,212	565,230	593,492	623,166	654,324	
저출산 대 사	책 업	계	15,738,882	3,651,607	3,834,187	4,025,897	4,227,191
	국 비	6,863,771	1,592,476	1,672,100	1,755,705	1,843,490	
	도 비	3,586,304	832,065	873,668	917,352	963,219	
	시군비	5,288,807	1,227,066	1,288,419	1,352,840	1,420,482	
구 보 사	강 건 업	계	10,592,054	2,457,484	2,580,357	2,709,373	2,844,840
	국 비	5,278,788	1,224,742	1,285,979	1,350,277	1,417,790	
	도 비	1,593,120	369,623	388,104	407,509	427,884	
	시군비	3,720,146	863,119	906,274	951,587	999,166	
정 보 사	신 건 업	계	9,793,034	2,272,100	2,385,705	2,504,990	2,630,239
	국 비	4,694,588	1,089,200	1,143,660	1,200,843	1,260,885	
	도 비	1,843,440	427,700	449,085	471,539	495,116	
	시군비	3,255,006	755,200	792,960	832,608	874,238	

지 한 사	역 방 업	계	4,882,540	938,950	1,126,740	1,314,530	1,502,320
		국 비	2,780,960	534,800	641,760	748,720	855,680
		도 비					
		시군비	2,101,580	404,150	484,980	565,810	646,640
암 건 진 사	업	계	22,645,734	5,254,080	5,516,783	5,792,621	6,082,250
		국 비	10,956,509	2,542,040	2,669,142	2,802,599	2,942,728
		도 비	3,506,766	813,612	854,292	897,006	941,856
		시군비	8,182,459	1,898,428	1,993,349	2,093,016	2,197,666
희 난 질	귀 성 환	계	16,905,336	3,922,240	4,118,351	4,324,267	4,540,478
		국 비	8,452,670	1,961,120	2,059,176	2,162,134	2,270,240
		도 비	2,535,797	588,336	617,752	648,639	681,070
		시군비	5,916,869	1,372,784	1,441,423	1,513,494	1,589,168
만 퇴 질	성 성 환	계	1,593,989	369,826	388,316	407,731	428,116
		국 비	689,242	159,913	167,908	176,303	185,118
		도 비	380,198	88,211	92,621	97,252	102,114
		시군비	524,549	121,702	127,787	134,176	140,884
건 증 사	강 진 업	계	22,616,174	5,247,222	5,509,582	5,785,059	6,074,311
		국 비	11,308,088	2,623,611	2,754,791	2,892,530	3,037,156
		도 비	3,712,859	861,428	904,499	949,723	997,209
		시군비	7,595,227	1,762,183	1,850,292	1,942,806	2,039,946
AIDS, 성병 등		계	389,263	90,314	94,829	99,570	104,550
		국 비	140,756	32,657	34,290	36,004	37,805
		도 비	102,701	23,828	25,019	26,270	27,584
		시군비	145,806	33,829	35,520	37,296	39,161
응 의	급 료	계	11,158,000	2,407,000	2,646,000	2,910,000	3,195,000
		국 비	10,197,000	2,199,000	2,418,000	2,660,000	2,920,000
		도 비	961,000	208,000	228,000	250,000	275,000
		시군비					
보 기 시 보	건 관 설 강	계	71,985,477	20,421,297	16,698,679	16,556,377	18,309,124
		국 비	47,990,319	13,614,198	11,132,453	11,037,585	12,206,083
		도 비					
		시군비	23,995,158	6,807,099	5,566,226	5,518,792	6,103,041
보 기 장 보	건 관 비 강	계	6,279,814	1,512,099	2,293,708	909,054	1,564,953
		국 비	4,186,543	1,008,066	1,529,139	606,036	1,043,302
		도 비					
		시군비	2,093,271	504,033	764,569	303,018	521,651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 제안이유

- 300만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조례가 지난 제21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됨에 따라
 - 도청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될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음.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 우리 道에 본적과 주소를 두지 않는 도청이전 및 신도청소재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 도지사가 6인, 도의장이 5인을 추천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추천된 11명의 위촉 대상자를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앞서 미리 도의회의 위촉 동의를 요청하는 것임.

2. 위촉 대상자(11명)

가. 도지사 추천(6명)

① 권 용 우(權容友)

- ▶ 생년월일 : 1948. 4. 7
-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1
- ▶ 전문분야 : 도시지리
- ▶ 현 직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② 김 철 수(金哲洙)

- ▶ 생년월일 : 1950. 1. 20
-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2가 2-2
- ▶ 전문분야 : 교통정책·도시계획
- ▶ 현 직 : 계명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③ 서 의 택(徐義澤)

- ▶ 생년월일 : 1937. 7. 24
-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350
- ▶ 전문분야 : 건축공학·도시계획
- ▶ 현 직 :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좌교수

④ 이 규 방(李揆邦)

- ▶ 생년월일 : 1950. 7. 9
-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30-14

- ▶ 전문분야 : 응용미시경제
- ▶ 현 직 : 한국토지공사 상임 고문

⑤ 이 상 은(李相垠)

- ▶ 생년월일 : 1948. 6. 24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
- ▶ 전문분야 : 환경관리·기술정책
- ▶ 현 직 : 아주대학교 환경건설교통학부 교수

⑥ 이 성 근(李盛根)

- ▶ 생년월일 : 1952. 12. 20
-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697-1
- ▶ 전문분야 : 지역정책·도시계획
- ▶ 현 직 : 영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나. 도의장 추천(5명)

① 고 병 호(高秉浩)

- ▶ 생년월일 : 1949. 7. 16
-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752
- ▶ 전문분야 : 도시행정
- ▶ 현 직 : 청주대학교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② 김 동 찬(金東贊)

- ▶ 생년월일 : 1952. 2. 28
-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99-1
- ▶ 전문분야 : 조경설계
- ▶ 현 직 :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

③ 원 제 무(元濟戊)

- ▶ 생년월일 : 1949. 2. 19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33
- ▶ 전문분야 : 교통공학
- ▶ 현 직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④ 이 승 종(李勝鐘)

- ▶ 생년월일 : 1955. 8. 19
-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14
- ▶ 전문분야 : 지방행정
- ▶ 현 직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⑤ 최 덕 철(崔德哲)

- ▶ 생년월일 : 1953. 6. 12
-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448-9
- ▶ 전문분야 : 경영학
- ▶ 현 직 :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의정활동보고서

(제213회 임시회)



2007. 4 인쇄 / 2007. 4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